

노인일자리사업 성과관리와 '07년
평가체계 개선방안

양기용(부경대 행정학과)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제 1 부. 노인일자리사업 성과관리와 노인일자리사업 평가

1. 노인일자리사업 개요
2. 노인 일자리 사업에 대한 성과관리 필요성
3. 노인 일자리 사업에 대한 성과관리 방향
4. 현행 노인일자리 평가실태와 문제점
5. 노인일자리 사업 평가체제 개편 방안

제 2 부. '07년 평가체제 및 평가지표 개발(안)

1. '07년 노인일자리사업 평가 추진방안
2. '07년 노인일자리사업 평가지표 구성(안)

제 1 부. 노인일자리사업 성과관리와 노인일자리사업 평가

1. 노인 일자리 사업 개요

(1) 노인 일자리 사업의 필요성과 사업 유형

□ 노인 인력 활용의 필요성

- 인구구조의 노령화가 빠르게 진척됨으로써 이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에 대처가 필요함.
- 통계청 추계에 의하면, 2019년에는 65세 이상 인구가 14%가 넘는 고령사회에 진입, 2026년에는 20%의 초고령 사회에 진입할 예정.

구 분	도달년도			소요년수	
	고령화사회 (7%)	고령사회 (14%)	초고령사회 (20%)	고령사회 도달	초고령사회 도달
한 국	2000	2018	2026	18	8
일 본	1970	1994	2006	24	12
독 일	1932	1972	2009	40	37
미 국	1942	2015	2036	73	21
프랑스	1864	1979	2018	115	39

자료 : 보건복지부, 「통계청 자료 및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대비 심층분석」, 2006.11

- 그러나 아직 노후 소득보장체계가 완전하게 설립되지 못하는 등 고령화 사회에 대한 대비가 미흡하여 고령인구의 안정적인 생활이 보장되기 어려움.
- 노동인구 고령화와 경제활동인구 감소로 저축률 저하, 노동인구의 양과 질의 저하 등 경제 전체에 대한 투입요소 감소로 인한 잠재성장률 저하가 우려됨.

- 압축적 고령화로 인해 국가의 생산성 저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노인 인력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음.

□ 노인일자리 사업의 운영과 실태

- 노인일자리 사업은 보건복지부와 노동부 등에서 추진하고 있음. 보건복지부는 노인의 소득창출과 여가선용 등 노인복지 또는 시혜적 입장의 정책을, 노동부는 노인인력 활용이란 접근방식을 취함. 정부내 복수의 부처에서 유사한 성격의 사업을 각각 수행하고 있으나 상이한 정책목표가 혼재하고 있으며, 이들 간의 조율작업이 요구됨.
- 보건복지부는 노인복지법 제23조와 제25조를 근거로 하여 65세 이상의 노인을 사업대상으로 노인들의 사회참여확대를 위한 일자리의 창출을 목적으로 노인취업상담 및 알선, 공동작업장, 노인일자리 사업 등을 운영하고 있음.
- 노동부는 고령자고용촉진법에 근거하여 55세 이상 고령자를 사업대상으로 노동시장 내 재취업이나 계속고용을 목적으로 직업능력개발훈련, 취업알선, 고령자고용 정보센터, 적합 직종개발, 고용촉진세제지원, 사회적 일자리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 중임.

□ 보건복지부 일자리 사업의 주요 목표

- 첫째, 고령사회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노인문제에 대한 사전 예방, 둘째 적극적 사회참여 확대를 통한 사회적 가치 창출 극대화 도모(노후건강유지, 보충적 소득지원 등의 사회적 비용절감 효과 등), 셋째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사회적일자리 창출을 통한 사회참여 도모, 넷째 노인인력 활용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 및 민간 참여 도모, 마지막으로 노인의 적극적 사회참여 기회제공을 위한 교육·훈련의 강화.
- 이러한 정책목표는 일자리 사업의 평가의 방향을 제시하여 줌.

□ 노인 일자리 사업 유형 개요

구 분	정 의	일자리 사례	주요 수행기관
공익형	-지방자치단체 고유 업무영역(환경/ 행정/ 시설관리 등)에서 창출된 노인적합형 일자리로서 지역사회 발전 및 개발에 공헌하는 공익성이 강한 일자리	-거리환경개선, 자연환경보호, 교통질서 및 주차제도, 지역행정 조사, 지하철 이용질서 제도, 공공시설 관리, 사회복지시설(생활 시설에 한함) 지원 등	지방자치단체, 위탁기관
교육복지형	교육형 -특정분야의 전문지식이나 경험을 소유했거나 전문교육을 받은 자가 교육기관 및 문화재시설 등에서 피교육자를 대상으로 강의 또는 해설을 하는 일자리	-1~3세대강사파견, 노-노교육강사파견, 취미활동강사파견, 체육(건강)활동강사파견, 문화재해설, 숲생태해설 등	노인복지관
	복지형 -돌봄이나 상담 등 전문기술을 습득한 건강한 노인이 사회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필요한 사회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자리	-거동불편요보호자 돌봄서비스, 사회복지(생활)시설이용자 돌봄 지원, 소외계층지원, (노인)가구 주거개선, 아동청소년보호(상담·선도활동 등), 문화복지사업 등	노인복지관, 재가노인시설
자립지원형	인력파견형 -수요처의 요구에 의해서 일정 교육을 이수하거나 관련된 업무능력이 있는 자가 해당수요처에 파견되어 근무한 대가로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일자리	-시험감독관, 주유원, 주례사, 경비원, 가사도우미, 미화원, 식당보조원 등	대한노인회
	시장형 -노인들이 공동으로 일정 수준 이상의 수익이 창출되는 다양한 업종 사업단 운영을 통해 확보되는 일자리	-식품 제조·판매, 특산물 제조·판매, 공산품 제조·판매, 공동작업장 운영, 지하철택배, 세차 및 세탁, 지역영농사업	시니어클럽

자료: 보건복지부 (2007), 보건복지부·노인인력개발원(2007)

□ 유형별 세부 내용

○ 공익형

- 정의: 지방자치단체 고유업무영역(환경, 행정, 시설관리 등)에서 창출된 노인적합형 일자리로서 지역사회 발전 및 개발에 공헌하는 공익성이 강한 일자리
- 목적: 지자체 고유 업무 영역에서 저비용 고효율의 노인일자리 창출을 통해 지자체의 행정비용 절감, 전문기술이 없거나 고연령 등으로 인해

사회에서 소외된 노인층에게 사회에 공헌할 기회 제공으로 참여노인의 자존감 고취

- 사업종류:

- . 거리환경개선, 자연환경보호, 교통질서 및 주차계도, 지역행정 조사, 지하철 이용질서 계도, 공공시설 관리, 사회복지시설(생활시설에 한함) 지원 등

- . 부적합사업: 등하교길 단순 교통정리 등

○ 교육형

- 정의: 특정분야의 전문지식이나 경험을 소유하였거나 전문교육을 받은 자가 교육기관 및 문화재시설 등에서 피교육자를 대상으로 강의 또는 해설을 하는 일자리

- 목적: 특정 분야의 전문지식 및 경륜 등을 가지고 있는 노인인적자원으로 하여금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 부여, 참여노인의 전문능력을 향상시켜 수요처에서 자발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

- 사업종류:

- . 1-3세대강사파견, 노-노교육강사파견, 취미활동강사파견, 체육(건강)활동강사파견, 문화재해설, 숲생태해설 등

○ 복지형

- 정의: 돌봄이나 상담 등 전문기술을 습득한 건강한 노인이 사회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필요한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자리

- 목적: 건강을 유지하고 있는 동안 지역사회 내 다양한 취약분야에서 사회서비스 확충을 위해 기여할 수 있는 기회 부여, 참여자의 자긍심 증진 및 서비스이용자의 생활안정 동시 도모

- 사업종류: 거동불편요보호자 돌봄서비스, 사회복지(생활)시설이용자 돌봄 지원, 소외계층지원, (노인)가구주거개선, 아동청소년보호(상담·선도활동 등), 문화복지사업 등

- 부적합사업: 경로당 파견 단순 중식제공· 청소서비스 지원사업, 무급자원 봉사 운영프로그램의 노인일자리사업 전환 사례, 지역내 행사 찬조공연 및 관련 기관 내부행사활동

○ 시장형

- 정의: 노인들이 공동으로 일정 수준 이상의 수익이 창출되는 다양한 업종

의 사업단 운영을 통해 확보되는 일자리

- 목적: 수익이 창출되는 경제사회활동에 종사하도록 지원함으로써 노인의 노후자립심을 배양, 일정기간(3년)지원 후에는 매출규모에 따라 인센티브 차등 지급 또는 독립 운영될 수 있도록 함으로서 예산절감을 포함한 국가적 비용절감 효과
- 사업종류: 식품 제조·판매, 특산물 제조·판매, 공산품 제조·판매, 공동작업장운영, 지하철택배, 세차 및 세탁, 지역영농사업

○ 인력파견형

- 정의: 수요처의 요구에 의해서 일정 교육을 수료하거나 관련된 업무능력이 있는 자가 해당수요처에 파견되어 근무한 대가로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일자리
- 목적: 수요처에서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노인의 노후생활보장을 지원함, 업무수행능력 배양 등을 위한 일정기간 교육 지원 후에는 파견 사업단별로 독립 운영될 수 있도록 함으로서 예산절감 효과
- 사업종류: 시험감독관, 주유원, 주례사, 경비원, 가사도우미, 미화원, 식당보조원 등

(2) 노인 일자리 사업예산 개요 및 지원방식

□ 노인 일자리 사업의 예산

- 노인일자리 사업 관련사업 예산은 노인일자리 확충, 대한노인회 취업지원센터 지원,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지원 등으로서 일반회계를 기준으로 하여, 2006년도는 약 594억이었으며, 2007년도에는 844억이 책정됨. 노인일자리 사업 관련 예산이 전년대비 약 42%가 증가하였음(표 1 참조).
- 2006년도와 2007년도의 예산증감을 보면, 노인일자리 창출사업이 2006년도에 520억에서 2007년도에 약 45%가 증가한 753억이 책정되어, 전년도에 비해 크게 예산액이 증가함. 대한노인회취업지원센터 운영비는 2006년, 2007년 모두 61억이 책정됨.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의 지원비는 2006년도

<표 1> 보건복지부의 노인복지 및 노인 일자리 관련 예산 현황(2007년도)

(단위 : 백만원)

구 분(총 32개 사업)		'06예산 (A)	'07예산안 (B)	증 감	
				(B-A)	(%)
총 계		421,716	588,335	166,619	39.5
[일반회계]		402,272	565,274	163,002	40.5
노인 생활안정	○ 경로연금	215,318	217,500	2,182	1
	○ 노인복지사업관리	186	177	△9	△4.8
	○ 사할린한인생계비지원	2,064	9,150	7,085	343.2
	○ 노인보호전문기관	1,200	2,000	800	66.7
	○ 노인복지민간단체지원	846	986	140	16.5
	○ 노인자원봉사활성화(신규)	-	400	400	순증
	○ 노인의 날 행사(신규)	-	120	120	순증
○ 독거노인도우미파견(신규)	-	23,556	23,556	순증	
노인 의료보장	○ 노인수발보험지원	9,083	11,511	2,428	26.7
	○ 노인수발보험 기반조성(신규)	-	2,143	2,143	순증
노인요양 시설확충	○ 노인요양시설확충(기능보강, 그룹홈, 다기능)	103,815	115,240	11,425	11.0
	○ 재가지원센터 기능보강(신규)	-	28,755	28,755	순증
	○ 노인돌봄미 바우처(신규)	-	32,161	32,161	순증
	○ 노인실비입소이용료 지원(신규)	-	15,217	32,161	순증
노인 일자리지원	○ 노인일자리확충	52,013	75,275	23,302	44.8
	○ 대한노인회취업지원센터 운영	6,122	6,122	-	-
	○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지원	1,324	3,022	1,698	128.2
장사시설확충	○ 장사시설 설치 등	10,000	21,613	11,613	116.1
[농특회계]		3,159	2,550	△609	△19.3
노인 일자리지원	○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지원 (일반회계로 변경 지원)	409	-	△409	△100
노인의료보장	○ 농어촌재가노인복지시설확충	2,750	2,550	△200	△7.3
[균특회계]		-	987	987	순증
노인일자리 지원	○ 노인일자리지원(제주)(신규)	-	987	987	순증
[국민건강증진기금]		16,285	19,524	3,239	19.9
노인의료보장	○ 노인건강관리	1,407	3,018	1,611	114.5
	○ 공립치매병원확충	14,878	16,506	1,628	10.9

자료: 보건복지부(2007), 노인보건복지사업

에 13억에서 2007년도에는 30억으로서 약 128%가 증가함.

- 예산중에서 가장 큰 비중은 노인일자리 확충이며, 주로 노인일자리 참여 노인에 대한 인건비, 교육 및 부대비용임. 노인일자리사업 운영지원은 2005년부터 시니어클럽 운영비지원이 지방으로 이양되었고, 2006년부터 직능시니어클럽 운영지원이 신규로 책정됨.

□ 노인일자리 사업의 예산지원방식

- 광의의 노인일자리 사업은 노인일자리 사업외의 고유사업을 포함
 - 노인 일자리사업은 정부에서 일정한 기준에 의해 참여노인에게 인건비가 지원되는 사업인데 반해, 고유사업은 시니어클럽 등에서 자체적으로 사업아이템을 선정하여 정부 보조금을 받지 않고 추진하는 사업을 의미.
 - 노인 일자리 사업의 경우 수행기관이 사업프로그램을 신청하면, 시군구 -> 시도 -> 보건복지부, 노인인력개발원에서 선정을 해서 참여 노인의 인건비를 지급함.
- 수행기관의 예산지원방식
 - 시니어클럽의 경우 예산은 수행기관의 운영비(직원인건비, 사업운영비)에 사용하고, 참여노인에게는 시니어클럽이 일자리 사업단을 만들어 참여노인이 일자리에 참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이익금을 배분해 줌(전체 이익금 전부를 노인에게 주기도 하고, 수익금의 5%정도를 사업단에서 가져가기도 함).
 - 2005년 시니어클럽 개소당 연간 운영비 지원기준은 직원수에 관계없이 1억5천이 지급되고 있으며, 분권교부세로 분기별로 지원되고 있음.
 - 대한노인회 취업지원센터 예산은 운영비(지구인건비, 사업운영비)에 사용하고, 참여노인은 수요처(주유소, 민간회사 등)에 파견되어 파견처에서 임금을 받음.
- 사업예산 구성
 - 노인일자리사업에 소요되는 사업비 예산은 지자체 경상보조사업으로 국고에서 일부 지원되고 나머지는 지자체가 부담하고 있다. 즉 서울시 노인일자리 사업비는 국고 30%, 서울시가 70%를 각각 부담하고, 기타 15개

- 시·도는 국고와 지방비가 각각 50%씩 균분하여 부담함.
- 지자체가 부담하는 지방비 부담방법은 지자체 특성에 따라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음. 즉 지자체 총 부담률 50%를 광역과 기초가 각각 25%씩 다시 균분하여 부담하는 경우도 있고, 광역지자체가 50% 전액 부담하거나 기초지자체가 50% 를 부담하는 경우도 있음.
- 노인일자리사업은 2005년에 분류된 지방이양사업에 포함되지 않아, 노인 일자리사업을 중앙정부차원에서 총괄·지원하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로 보임.

○ 일자리유형에 따른 인건비 및 부대비용 내역(2007년도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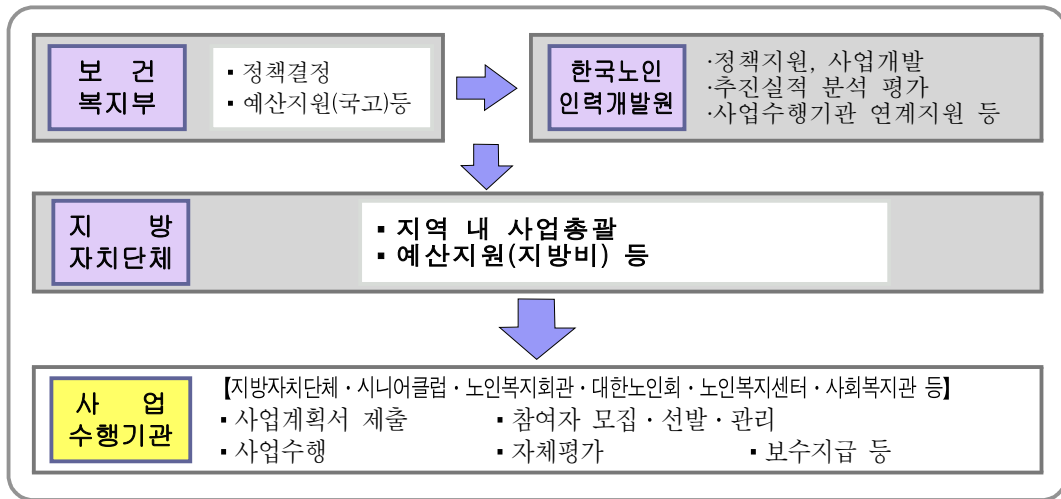
유형	참여자 1인 예산지원기준				구성비율	국고 보조율
	인건비 (월)	참여개월	교육 및 부대경비	계		
공익형	20만원	7개월	10만원	150만원	45% 이내	50% (서울은 30%)
교육형	20만원	7개월	15만원	155만원	15% 이내	
복지형	20만원	7개월	15만원	155만원	25% 이상	
시장형		연중		115만원 (인건비 및 사업비)	10%	
인력파견형		연중	10만원	10만원	5%	

자료: 보건복지부 (2007), 보건복지부·노인인력개발원(2007)

(3) 일자리 사업의 추진체계

□ 추진 체계

- 노인일자리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주체는 크게 네 가지로 구분함.
- 첫째, 중앙정부의 노인일자리사업 주무 부처인 보건복지부가 있고, 둘째, 전국 노인일자리사업을 총괄·지원하는 노인인력운영센터가 있으며,
- 셋째, 지역 노인일자리사업을 총괄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있고,
- 넷째, 현장에서 노인일자리사업을 수행하는 노인복지관, 시니어클럽, 종합사회복지관, 대한노인회 취업지원센터, 기초 지자체 등 사업수행 기관이 있음.



자료: 보건복지부·노인인력개발원 (2007), 2007년도 노인일자리 사업 종합 안내

<그림 1> 보건복지부 노인일자리 사업의 추진체계도

□ 사업추진 주체별 역할

<표 2> 일자리 주요 사업주체별 세부 역할

구분	역할
보건복지부 (노인지원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인일자리정책결정 및 종합계획수립 - 노인일자리사업에 대한 법령 및 제도 운영 - 지자체 및 사업수행기관의 노인일자리사업 지원(예산, 인력 등) - 대국민 홍보
노인인력개발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국 노인일자리사업 추진 총괄 및 지원 - 지역의 노인일자리사업 수행기관 간 연계·조정 - 노인일자리 개발·보급 및 심사평가 - 노인일자리 관계자 교육·훈련 및 정책포럼 개최 - 노인일자리 박람회 지원 및 실적관리 - 노인인력에 대한 수급동향 분석 및 정책개발 - 노인인력 D/B 및 업무지원전산시스템 구축 - 노인일자리사업에 관한 조사연구
광역자치단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도 노인일자리사업 추진계획 수립 및 재정 지원 - 시·도 노인일자리사업 수행 전반에 관한 총괄·조정 - 시·도 노인일자리사업 홍보 추진 - 시·도 노인일자리박람회 개최 - 사업수행기관 전담인력 교육
기초자치단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군·구 노인일자리사업 추진계획 수립 - 시·군·구 노인일자리사업 수행 전반에 관한 총괄·조정 - 사업수행기관 선정 및 수행기관 사업운영에 대한 관리·감독 - 노인일자리관련 사업수행기관에 대한 재정·행정 지원 - 노인일자리사업 지역협의체 구성·운영 - 노인일자리사업 발대식 수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참여자 통합소양교육 실시 지원(민간수행기관 연계) - 노인일자리 박람회 개최 지원 등
사업수행 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인일자리사업 실행계획 수립·시행 -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 모집, 등록, 상담, 선발, 교육, 현장투입 등 일자리관련 제반 업무 수행 - 보수지급, 근무상황, 업무확인 등 참여자 관리 - 정기간담회 개최, 만족도조사, 사업자체평가회 등 사업관리 - 참여자관리, 보수내역 등에 대하여 각종 업무지원전산시스템 활용 - 노인일자리 박람회 개최 지원

자료: 보건복지부 (2007), 2007년도 노인보건복지사업안내

□ 추진추계별 세부 역할 비교

사용자 구분	역 할
광역지자체(시·도) 담당자 및 전담인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 기초지자체 사업계획등록 확인 및 수정 요구조치 - 각 기초지자체 사업계획의 적정성(사업명, 유형, 기간, 예산, 배정인원 등) 확인 - 사업계획변경 리스트 확인 및 조치 - 월별 실적관리 부진기관 확인 및 독려 - 각 기초지자체 업무담당자 전산관련 문의 응대 및 교육 지원 - 시도 및 수행기관전담인력 활용현황 관리, 시니어클럽사업개발비현황 관리
기초지자체(시·군·구) 담당자 및 전담인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계획 관리 (등록, 수정, 삭제) - 참여자 관리 (등록, 수정, 삭제) - 개인별 사업참여상태 관리 (접수, 참여, 중도포기 등) - 보수 관리, 예산집행 관리, 국비·지방비 관리 - 월별 전산입력 마감 및 관리 - 월별 실적관리 부진기관 확인 및 독려 - 기초지자체내 수행기관 관리 (등록, 수정, 삭제) - 읍면동 및 수행기관 업무담당자 전산관련 문의 응대 및 교육 지원 - 상해발생현황 관리, 노인공동작업장현황 관리, 전담인력 활용 현황 관리
기초지자체(읍·면·동) 담당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참여자 관리 (등록, 수정, 삭제) - 개인별 사업참여상태 관리 (접수, 참여, 중도포기 등) - 보수 관리
수행기관 담당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계획 관리(등록, 수정, 삭제) - 수행기관 관리(등록, 수정, 삭제) - 참여자 관리 (등록, 수정, 삭제) - 개인별 사업참여상태 관리 (접수, 참여, 중도포기 등) - 보수 관리, 예산 관리 - 월별 전산입력 마감 (익월 10일 이내) - 상해발생 현황 관리 - 시니어클럽은 자립사업단 운영현황 추가관리

자료: 보건복지부 (2007), 2007년도 노인보건복지사업안내

2. 노인 일자리 사업에 대한 성과관리 필요성

○ 노인 일자리 사업과 국가운영전략

- 사회 서비스는 더 이상 일부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잔여적 수준(residual level)의 공공서비스라 한정하기 어려움. 오히려

‘저출산 고령사회’에 따른 ‘인적 자원의 양적 질적 수준 확보’ 라는 거시적 사회 변화과정에서 요구되는 필수적인 사회경제적 시스템으로 자리 잡고 있으며, 그 서비스 영역이나 대상에 있어서도 보편적인 수준으로 확대 향상되고 있음. 개별 사회적 서비스의 효과는 서비스 대상자의 복지수요에 대한 일회적인 충족에 한정되기보다는 전체적인 사회경제체제가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성장하기 위해 필수 불가결한 연관요소로 기능함.

- 노인 일자리 사업의 경우 역시 저출산·고령사회에서의 노동인력 확보, 노인 빈곤층에 대한 사회적 안전망을 제공하는 직접적인 효과를 낳고 있음. 나아가 노인 일자리 사업은 계층간·세대간·성별간의 잠재적인 갈등을 완화하거나 예방하는 사회통합적인 기능을 수행함. 이러한 사회적 서비스를 통하여 사회내 각 집단간에 또는 주류집단과 소외집단간에 나타날 수 있는 비생산적인 갈등을 미연에 방지하고 집단간에 신뢰를 구축하게 하여 이른바 사회적 자본 축적에 기여함.

○ 노인 일자리 사업에 대한 성과관리 필요성

- 노인 일자리 사업이 단순한 개별 복지 프로그램이라기보다는 위에서 살펴본바와 같이 사회적 투자로서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행과정상의 무리한 추진, 단기성과에의 집착, 부정 수급자 및 도덕적 해이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본질적 의미가 훼손되고 집행성과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져 노인 일자리 사업 자체가 정치적 논란에 휩싸일 가능성이 높음. 따라서 정기적인 성과관리를 통하여 사업에 대한 사전적인 점검과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함.
- 노인 일자리 사업에는 여러 정책주체들이 참여하고 있음. 보건복지부는 물론 지방자치단체(시·도 및 시·군·구)도 직간접적으로 관여하고 있고 공급기관 역시 시니어 클럽, 지방자치단체, 대한노인회 등이 참여하는 등 여러 공급주체들이 관여하고 있음. 노인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는 참여자들 역시 개인별 특성이나 참여하는 사업 유형별로 개인별 여건, 역량, 추구하는 기치와 목적에서 차이가 있음. 따라서 다양한 사업주체들에 대한 관리에 있어 획일적인 행정적인 지도, 점검 또는 감사 방식에 의존하기보다는 보다 탄력적인 성과관리방식이 더욱 적합함.
- 이처럼 노인 일자리 사업에 관여하고 참여하는 주체들이 민간부문과 공공

부문을 아우르는 복잡한 전달 및 참여체계를 가지고 있어 이들에 대한 관리방식은 위계적인 행정 지도와 점검보다는 협력적인 네트워크 체제를 통한 성과관리방식이 더욱 적합할 것으로 판단됨.

3. 노인 일자리 사업에 대한 성과관리 방향

○ 일반적인 평가유형별 성과관리 초점

- 정책평가

- 정책평가는 바람직한 사회를 구축하고 이를 달성하는 수단에 대한 정부의 기본방침이 좋은지 혹은 나쁜지에 대해 비판적으로 검토하는 입장으로, 정부정책의 목적과 목표를 성취하기 위한 기본방침과 후속조치들에 대해 평가하는 것임.
- 정책평가는 정책결정과 집행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정책과정상의 책임성을 확보하며, 정책평가와 정보제공으로 주민을 만족시키고, 높은 성과 달성을 유도함. 정책평가는 투입된 인적·물적 자원에 비해 어느 정도의 행정서비스의 목적을 달성했는지 등을 평가함으로써 정부의 국민에 대한 책임성을 증진시키고, 정부가 적시에 적절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지를 평가함으로써 정부의 대응성을 평가함 (정정길, 1997).
- 정책평가는 정책의 중단·축소·유지·확대 여부를 결정하는데 도움을 주는 정보를 제공하고, 동시에 정책내용(정책목표, 정책수단, 정책대상자의 내용)을 수정하는 필요정보를 제공함.

- 사업(프로그램) 평가

- 프로그램평가는 정책의 집행과정에서 사용된 구체적 정책수단을 평가하는 것으로서, 하위 수준의 정책평가와 혼용되어 활용되기도 함. 일반적으로 정책평가가 수행되는 여러 프로그램에 대한 개별 평가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정책평가와 프로그램평가는 유사하게 인식됨.

-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으로 프로그램평가는 정책을 구성하는 구체적인 정부 프로그램의 각 측면, 즉 과정, 직원관리, 비용 등을 검토하는 것으로 단기 또는 중장기간에 걸친 해당 프로그램의 구체적인 영향에 대한 검토가 중요함 (Busson, 1987).
- 프로그램평가는 현재 집행 중이거나 완료된 프로그램의 과거 성과를 평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회고적(retrospective)인 경향을 띠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프로그램의 미래 효과와 비용을 측정하기 위한 자료를 제공하기도 함.

- 기관평가

- 기관평가는 개별 정책이나 정책수단으로 사용되는 개별 프로그램과 사업에 대한 분석과 평가가 아니라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자체에 대한 평가를 의미함. 일상적으로 우리 행정기관의 경우 기관과 사업에 대한 평가가 주요 시책의 추진 및 진행을 관리하는 심사분석에 치우쳐 왔으나, 1990년대 중반부터 개별적으로 행정기관이나 공기업에 대한 기관평가가 이루어져 왔음. 2001년 정부업무등의평가에 관한기본법이 제정되어 체계적인 기관평가가 시행되고 있음.
- 기관평가는 기관이 수행하는 주요 정책과 사업, 기관의 역량과 노력정도, 기관서비스를 받는 고객들의 만족도 등을 종합적으로 아우르는 성격을 띠고 있음. 따라서 정책평가나 사업평가와 같은 인과관계에 따른 영향평가라기 보다는 정기적인 모니터링 성격이 강함. 따라서 개별 기관이 수행하는 핵심 정책과 사업들의 내용 및 기획과정, 정책추진과정에서의 효율성 및 시행과정의 적절성, 정책목표 달성도 및 효과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함. 아울러 기관 자체의 운영역량을 기획, 인력, 제도, 예산, 외부자원동원, 환류, 이용자 만족도 등 여러 측면에서 평가함.

- 성과평가

- 성과평가는 일반적으로 공공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에 초점을 맞추어 개별 프로그램이나 서비스의 효과성, 효율성, 형평성 정도를 명확하게 규

명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됨. 특히 개별 서비스 내용의 결정·집행과정에 투입되는 예산과 자원을 이용하여 어느 정도의 서비스 질과 결과를 달성했는가를 평가하고자 하는 것에 대한 관심으로 출발함(Hatry, et al., 1992).

- 따라서 성과평가의 주된 관심은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 정부활동의 고객인 시민을 만족시키는데 있으며, 성과평가를 통하여, 1) 정부의 책임성 강화 및 유도 2) 보상, 제재 등을 통해서 서비스 공급자에 대한 동기 부여 3) 이용자들의 서비스에 대한 관심 진작 4) 예산결정에 필요한 자료 제공 5) 서비스 향상을 위한 실증적 자료 제공 등을 목적으로 함.
- 그러나 최근에 들어와 흔히 성과평가를 단순히 서비스에 대한 사후적인 평가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기관이 수행하는 정책과 프로그램 그리고 서비스에 대한 통합적인 전략기획, 과정관리 및 평가와 환류로 이어지는 조직 및 인력관리를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거나 기관자체에 대한 평가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음. 나아가 조직차원뿐만 아니라 조직 구성원 개인차원에 대한 성과관리로도 활용되고 있어 다른 평가방식과 특별히 구별하지 않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음.

○ 일반적인 성과관리 초점

- 일반적으로 성과평가는 투입(inputs)과 과정(throughputs)부분 그리고 산출물(outputs)과 결과(outcome)부분에 초점을 맞추어 진행. 투입(inputs)은 인력, 자원, 장비 등 조직이 보유하고 있는 요소로 업무수행이나 서비스 생산을 위해 직접 투입된 생산요소를 의미함. 과정(throughputs)은 생산요소의 투입을 통해 업무 내지는 생산활동이 직접 이루어지는 집행과정을 말하며, 정부를 비롯한 공공분야에 있어 과정은 주로 서비스 제공이 이루어지는 각종 수행활동을 뜻함.
- 한편 산출물(outputs)은 생산단계의 결과로 투입물을 통한 생산활동에 의해 완성되어 제공되는 서비스나 물건 등 활동의 직접적인 결과물을 의미하고, 서비스의 양적인 측면을 강조. 결과(outcome)는 조직내 업무수행이나 생산활동을 통해 생산된 산출물이 궁극적(직·간접적)으로 전체사회 또

는 서비스 이용자와 수혜자에 미치는 영향 (impacts 또는 consequences)을 의미.

○ 사회 서비스에 대한 성과관리시 추가적 고려 요소

- 노인 일자리와 같은 사회적 투자서비스들에 대한 성과관리 역시 위에서 고려한 일반적인 요소들에 대한 검토가 우선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그러나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한 사회 투자적 정책과 서비스들에 대한 성과관리는 기존 일회적인 또는 소비로서의 사회 서비스정책들과는 다르게 다음과 같은 측면을 추가적으로 고려하고 강조할 필요가 있음.

- 중·장기 시간적 스펙트럼

· 사회적 투자 정책의 경우 단기간의 효과에 초점이 맞추어진 소득이전 정책과는 다른 성격을 지니고 있음. 즉 소비로서의 사회정책의 경우 소외계층이 겪고 있는 일시적인 위기극복이나 일상적인 생활유지를 위한 소득이전이나 임시보호 등이 정책과 사업의 초점과 수단이 됨. 따라서 정책효과 발생 시점 역시 단기적이거나 일회적 성향을 가지고 있음.

· 반면 사회 투자적 정책의 경우 정책효과의 회임기간이 중장기적이고, 기술과 지식습득과 같이 능력이나 역량배양의 경우 정책효과가 나타나기 위해서는 상당한 기간을 요구함. 예컨대 노인의 학습능력배양, 취업과 소득창출, 정서적 안정, 건강증진 등 사회 투자적 정책과 사업의 경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후 그 효과가 발현됨.

- 사회적 이동성(social mobility)에 기여 : 기회와 가능성의 확대

· 기존의 사회정책과 서비스들이 소외계층의 생활수준 유지, 안전 확보 그리고 외부 위협으로부터의 일시적 보호와 관련하여 현상유지적인 성격이 강함. 우리의 경우처럼 사회적 안전망이 충분하게 갖추어지지 못한 상황에서 소외계층에 대한 기본권적인 사회 서비스의 중요성은 매우 중요함. 이러한 생존권적인 서비스와 달리 사회 투자적 정책과 서비스의 경우는 개인과 계층의 동태적인 변화가능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

- 즉 사회 서비스의 경우 현재 배제상태(exclusion)하에서의 생존과 유지보다는 사회적 주류에로의 포함(inclusion)에 더 큰 의미를 두고 있음. 사회투자적인 정책과 서비스는 개인으로 하여금 사회적 주류로 포함될 수 있는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기회를 제도적으로 보장하여 주는 것을 궁극적인 서비스의 목표로 삼고 있음.
- 개인적 역량강화: 인지능력, 정서, 지식과 기술, 건강
- 기존 복지 서비스의 경우 주된 정책수단이 소득이전과 소득이전을 통한 최저생활유지지원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음. 일반적으로 소득 이전적 프로그램은 일회적으로 소비되는 패턴을 유지함. 그러나 미래 복지정책의 핵심적인 가치로 사회적 주류로서 경제활동에 주체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사회 구성원의 육성이라고 볼 때, 사회 서비스의 핵심은 고용에 적합한 역량과 능력을 갖추도록 지원하여 경제활동에 주체가 될 수 있도록 하는데 있음.
 - 이러한 점에서 사회적 투자는 정책수혜자의 개인적 역량강화(empowerment)를 우선 강조할 필요가 있음. 이러한 관점에서 사회투자적 서비스에 대한 평가시 주된 정책대상자는 보다 나은 취업을 원하는 성인 근로자 계층, 퇴직후 2차 취업을 희망하는 중장년노년층, 그동안 경제활동을 제한받아온 여성근로자층 그리고 미래의 근로계층인 영유아동이 됨.
 - 중장년 노인, 여성, 장애인, 근로 빈곤층의 경우 노동시장으로의 진입 또는 재진입을 돕기 위하여 취업관련 지식과 기술의 습득, 자활을 위한 자산형성지원과 같이 새로운 고용창출기회제공과 건강지원 등이 성과관리시 매우 중요한 요소로 고려되어야 함.
- 인구구조 개선 : 출산율제고 및 경제활동인구 증가
-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는 핵심적인 전제 조건중의 하나가 바로 건전한 인구구조 유지임. 적절한 출산율 유지를 통하여 고령화 속도를 조절하여 개인, 기업과 정부부문을 포함한 전체 사회시스템이 불가피하게 전

개되는 고령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중요.

- 출산을 제고뿐만 아니라 전체 국가적인 노동인력의 유지를 위하여 성년 근로자의 건강관리와 경제활동 지속을 위한 여러 조치들이 역시 사회 투자적 서비스의 중요한 내용임.

- 다양한 주체간 협력체제 구축 : Governance체제

- 기존 소득 이전적 사회복지 서비스의 주체는 공공부문으로 거의 독점적 역할과 책임을 감당하여 왔음. 지방자치단체는 과부하된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로 인하여 단순히 서비스 제공기관에 재정을 이전하거나 소득을 지급하는 역할에 그치고 있음.
- 반면에 사회 서비스는 소득 이전적 성격보다는 직접 서비스를 생산하거나 공급하는 형태의 서비스가 주류를 이루고 있어, 현재 우리의 복지서비스 전달체계상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서비스 전달에 많은 한계가 예상됨. 따라서 다양한 형태와 성격의 서비스 전달 및 생산주체들이 사회 서비스를 직간접적으로 제공하는데 관여하게 되고 이들간의 연계와 협력체계 유지가 매우 중요하게 됨.
- 결국 민간단체, 시민단체들과 지방자치단체 중 공공 기관들간의 유기적인 협력체제 구축이 사회 서비스의 성공적인 생산과 공급을 결정하게 될 것임.

○ 책임주체별 성과관리 초점

- 중앙정부

- 중앙정부는 노인 일자리 관련 정책과 서비스의 궁극적인 목표를 명확하게 해주어야 하며, 여러 기관에서 분산되어 추진되고 있는 여러 정책들과 서비스의 성과를 최종적으로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하여 주어야 함. 아울러 중앙정부의 성과관리체제는 국정방향과 연관하여 기관간 상호협력과 조정을 유도할 수 있는 정책조정 및 협력네트워크 정립으로 활용할 수 있음.

- 정책을 집행하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등에 궁극적인 성과기준을 제시하여 주는 동시에 성과결과는 예산요구의 근거로 활용될 수 있음.

- 광역자치단체

- 광역자체단체에서의 성과관리는 지역특성을 살린 노인 일자리 관련 종합대책 추진 및 프로그램 개발·보급, 기초자치단체에 대한 합리적인 예산배정과 신속한 예산집행, 중앙부처와의 정보교류 및 집행차원에서의 제도개선 건의, 지역내 인적·물적 복지자원조사 및 활용방안 모색, 시·군·구 및 민간시설 및 단체의 애로사항 대응, 지역내 형평성 유지를 위한 기획과 조사 그리고 시·군·구에 대한 지원에 초점을 맞추어 성과관리를 운영될 필요가 있음.

- 기초자치단체

- 기초자치단체의 경우 민간시설 및 단체와의 연계성 등에 초점을 맞추어 지역내 노인 일자리 사업수요 및 지역복지자원 등에 대한 조사 및 지역특성을 감안한 사업 프로그램 마련여부, 시·군·구의 노인 일자리 관련 전문인력 확충, 참여자 접근성 제고방안 모색, 지역내 민간시설 및 단체에 대한 지도 및 협력체제 유지, 정책대상집단의 의견 수렴과 지역내 관련 공공기관간의 협력체제 유지 등에 초점을 맞추어 성과관리를 진행할 수 있음.

- 공급기관

- 직접 노인 일자리를 제공하는 국공립·민간 시설 및 민간단체 등에 대한 성과평가는 사업계획 기획과정의 적합성, 전문인력의 확보, 투명한 참여자 모집과정, 참여자 의견 수렴 및 만족도 증진, 내부 기관 운영과정의 투명성과 체계성, 적절한 프로그램 개발 등에 초점을 맞추어 성과관리방향을 설정할 수 있을 것임.

4. 현행 노인일자리 평가실태와 문제점

□ 노인 일자리 평가실태

○ 평가대상사업

- 노인 일자리 평가 작업은 그 대상 사업이 복수로 존재하여 다양한 평가체계가 유지되고 있음. 즉 시·도 평가, 시·군·구 평가, 네가지 사업유형별로 별도의 평가지표, 평가방식 등이 활용되고 있음.
- 중앙평가위원회와 시도평가위원회 등이 최종 평가결과를 확정하는 작업을 수행하고 있음. 평가대상기관 역시 각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 시니어 클럽, 노인복지회고간, 대한 노인회 등 다양함.

○ 자율평가과 외부평가의 병행

- 노인 일자리 평가작업은 각 지표에 따라서 해당 서비스 제공기관이 자율적으로 자체평가를 수행한 후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그에 따라 상위평가주체가 확인작업을 수행함.
- 현실적으로 2,400여개의 노인 일자리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를 전적으로 외부평가에 의존하기에는 시간적인 한계로 인하여 자율적인 평가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됨.

○ 평가결과의 활용

- 각 평가대상 기관별로 우수기관 1-2개 기관을 선정하여 표창 및 선진국 견학기회를 제공하고 있음. 미진 프로그램의 경우, 각 평가대상사업별로 하위 5%에 해당하는 기관에 대해서는 개선조치를 요구하고 차후 평가에서도 개선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예산지원중단등 불이익을 부과

○ 평가지표

- 평가지표 체계는 평가대상기관이나 사업별로 차이가 있음. 시도의 경우에는 인력과 예산확보, 사업관리, 사업량 목표 달성과 참여자 만족도 조사결과를 반영하고 있음.
- 시군구의 경우 시도 평가와 크게 다르지 않아 인력 및 추가적인 예산확보, 사업관리 및 수행기관 지원실적을 평가하고 아울러 사업목표량관리를 강조하고 있음.
- 사업유형별 지표는 사업특성에 따라 약간씩 상이하나 주로 사업 목표량 달성도를 우선적으로 평가하고 있음. 상대적으로 공익형 사업은 참여자 선발 적정성을 강조하는 반면 교육형 사업은 보수교육을 중요시하고 있음. 복지형 사업 역시 참여자에 대한 교육과 관리를 강조하고 있는 반면에 인력과견형 사업은 수요처 개발과 사후관리 등을 추가적으로 평가하고 있음. 시장형 사업은 사업을 통한 수익금 실적, 사업지속성, 판로개척 등 기업으로서의 조건에 대한 평가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

□ 현행 평가방식의 문제점

○ 평가대상 과다로 인한 형식적 평가와 평가의미 퇴색 : 평가방식 전환

- 작년의 경우, 노인 일자리 사업을 수행하는 평가대상기관이 800여개에 이르고, 관련 프로그램만도 1,800여개에 이르고 있어 현실적으로 이처럼 많은 평가기관과 프로그램을 특정시기를 정하여 동시에 평가하는 것은 어려운 일임.
- 더구나 노인 일자리사업 평가결과에 따른 재정지원이나 인력지원이 기대만큼 크지 않아 평가관련 업무는 부수적인 업무부담으로 인식됨. 따라서 평가결과에 따른 의미있는 인센티브가 제공되지 않을 경우에 이러한 불만이 더욱 커질 수 있을 것임.
- 결국 평가결과에 대한 신뢰성이 떨어지고 평가결과에 순응하기가 어려워짐. 복지부 등 평가기관 역시 평가결과가 적실성이 결여된다고 판단한다면 평가결과에의 활용이나 충분한 인센티브 제공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게 됨. 따라서 평가방식의 수정, 지표체계의 수정 등을 통하여 실제적인 평가가

가능하도록 새로운 평가들을 제시하는 노력이 필요함.

○ 평가의 복잡성 : 평가체제의 단순화 필요

- 현재의 평가체제는 “수행기관 자율평가 ⇒ 시·군·구 취합 ⇒ 시·도 평가위원회 평가 ⇒ 중앙평가위원회 확인 및 평가” 또는 “시·도 자율평가 ⇒ 중앙평가위원회 확인 평가” 흐름으로 이루어짐.
- 중앙평가위원회는 시도 및 시군구의 자율평가결과를 현장평가를 통해 확인하여 우수 기관과 우수 프로그램을 확정하는 역할을 수행함. 동시에 시니어 클럽의 고유사업에 대한 평가, 대한노인회 취업지원센터에 대한 평가 작업을 실시함. 시도평가위원회 역시 중앙평가위원회와 유사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 중앙평가위원회는 시도 평가위원회의 결과를 그대로 수용하는 경향이 대부분으로 실제 중앙위원회의 독자적인 평가기능은 매우 미약함. 이러한 수직적인 교차평가와 확인과정은 해당 시도나 시군구 관할에 속해있는 업무수행기관에 대한 우호적인 평가를 방지하는 상호견제 역할과 지역실정을 정확하게 알기 어려운 중앙평가위원회의 평가를 보완하는 긍정적인 기능도 있음.
- 그러나 여러 단계에 걸쳐 노인일자리 사업, 시니어클럽, 대한노인회 평가 등을 동시에 실시함에 따라 평가의 복잡성이 증가하고 있음. 무엇보다도 평가체제의 단순화 필요함.

○ 평가결과 활용의 미약 : 우수사례 확산과 충분한 보상체계 필요

- 노인 일자리사업의 평가결과에 대한 보상과 처벌수준은 매우 미약함. 평가결과에 따라 우수 시도 및 우수 시군구를 선정하지만, 그에 따른 인센티브가 평가과정이나 평가결과에 많은 관심을 기울일 정도로 비중이 있는 가는 의문임.
- 시니어 클럽이나 노인회 취업지원센터에 대한 평가결과에 따른 인센티브 역시 성과급 배분과 선진국 견학 인센티브 정도로 피 평가기관으로 하여

금 평가에 대한 관심을 유도할 정도로 충분한 동기부여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음.

- 우수 프로그램이나 우수사례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과 지속적인 관리 및 확산이 뒤따르지 못하고 표창과 시상에 그치고 있음. 따라서 평가결과에 대한 충분하고 확실한 보상과 처벌이 보장되어야 하며 아울러 우수사례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통하여 전국적인 수범사례로 확산시켜 평가의 긍정적인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보상체계의 개선이 필요함.

○ 시도 및 시군구 평가의 차별화 부족 : 행정기관의 역할 반영 필요

- 시도인 광역자치단체에 대한 평가방식과 시군구에 대한 평가방식이 크게 구별되지 않고 있음. 노인 일자리 사업을 지원하는 역할에 있어서 시도와 시군구가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의 유사한 평가방식과 평가지표가 사용되고 있음.

- 따라서 시도 및 시군구의 평가에 자치단체가 수행하는 주요 기능이 추가적으로 반영될 필요가 있음. 즉 시도의 경우 노인일자리 사업관련 시도 종합계획수립 여부에 대한 평가와 사업수행기관 전담인력 교육 여부 등이 추가적으로 평가항목으로 포함될 수 있을 것임. 시군구의 평가항목으로 월별 전산입력 관리상황, 수행기관에 대한 예산적기배정 여부 등이 추가될 수 있음.

○ 성과지표로서 산출물에 대한 지나친 강조 : 평정비중 조정

- 노인 일자리사업의 성과로서 당초에 목표했던 일자리수를 만들어 냈는지가 가장 강조되고 있음. 노인 일자리사업은 일자리 인건비를 정부가 지원하는 구조로서 창출된 일자리 수는 인건비 지원액 규모, 즉 사업의 투입(input)과 직결되는 성과지표임.

- 결국 예산 투입 규모가 곧바로 사업의 실적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산출지표인 일자리 창출개수는 자치단체의 재정능력이나 사업수행기관이 변화시킬 수 없는 자치단체가 보유하고 있는 자원에 종속된다는 점에서 지나친 강조는 조정될 필요가 있음.

○ 결과를 나타내는 성과지표의 부족 : 지원대상 기관의 실적 반영

- 참여자의 만족도에 관한 설문조사 외에는 성과관련 지표들이 활용되고 있지 않음. 일자리사업의 궁극적 효과라고 할 수 있는 노인문제에 대한 사전 예방, 노후건강유지, 보충적 소득지원효과, 노인의 적극적 사회참여 기회제공을 위한 노인역량강화 등에 대한 실제적인 측정이 여의치 않음.
- 시도의 역할 평가에 해당 시도 소속 시군구에 대한 평가결과가 반영되고 있지 않음. 시도의 중요한 역할인 시군구에 대한 지원이나 관리 감독의 최종 결과는 결국 시군구에 대한 평가결과일 수 있음. 같은 논리로 시군구의 평가결과에 시군구의 지원대상인 수행기관의 업무수행결과가 반영되고 있지 못함.
- 따라서 시군구의 평가결과의 일부분은 관할 구역내 사업수행기관의 평가결과의 평균이 반영될 필요가 있으며, 시도의 평가에도 관할 구역내 시군구 평가결과의 평균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성과평가 논리에 적합할 것으로 판단됨.

5. 노인일자리 사업 평가체제 개편 방안

새로운 평가틀 제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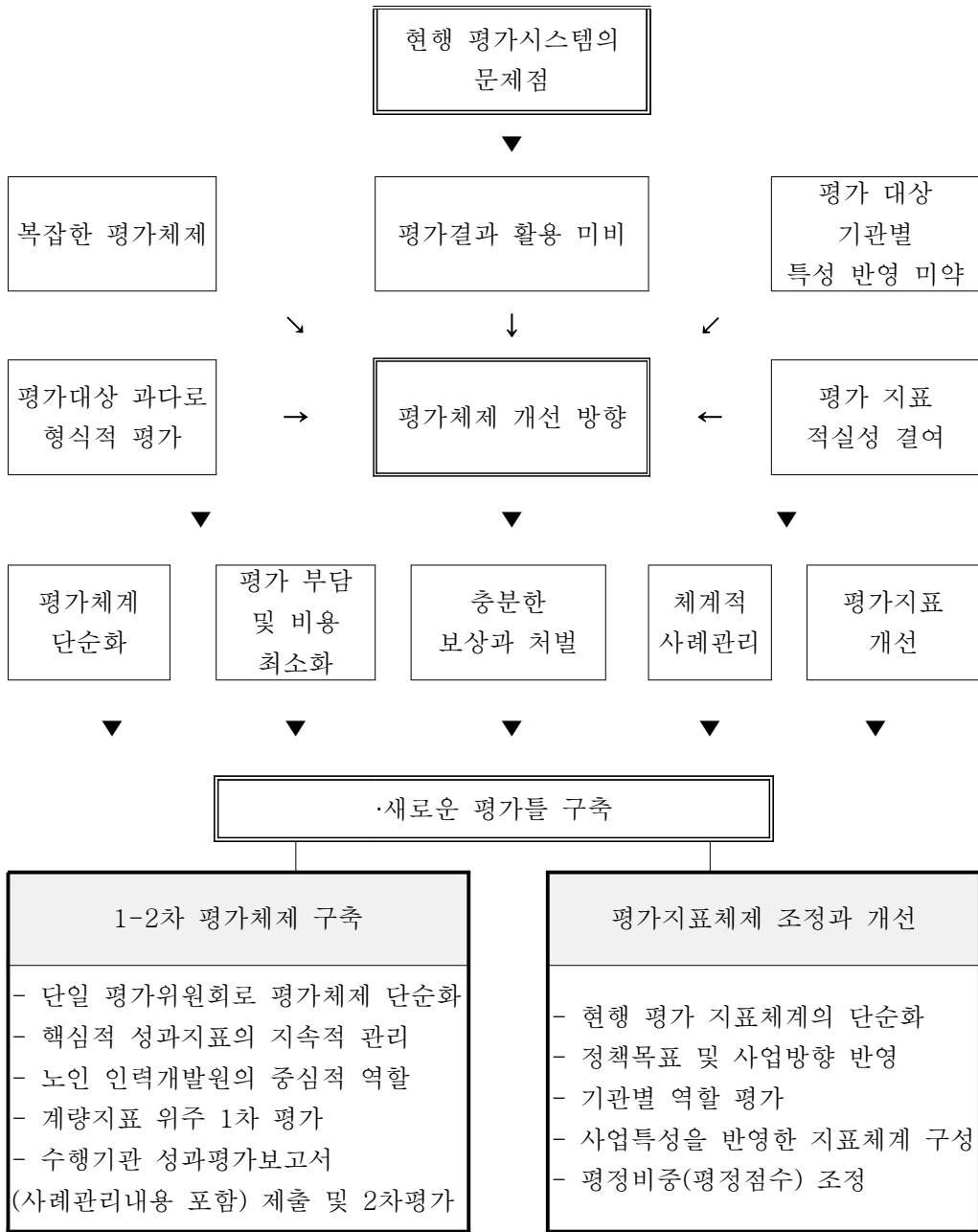
○ 현실적으로 적실한 평가체제 필요

- 현재 시행하고 있는 평가 시스템은 실제로 운영되기 어려운 구조임. 무엇보다도 1,800여개의 프로그램을 연 1회, 연말에 일정기간동안에 걸쳐 임시 평가단을 구성하여 평가한다는 것 자체가 현실적으로 실현되기 어려움. 실제 평가가 진행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평가결과의 적실성 자체가 의문시될 수밖에 없는 상황임.

-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인 일자리 사업에 대한 체계적인 평가는 요구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보다 현실적인 평가방식을 모색하여야 함. 따라서 4개 유형별 노인 일자리 사업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는 현재의 일괄적인 평가를 관련기관이 수행하는 업무 순서대로 각 업무단계별 평가지표를 근거로 1차 평가를 실시함.
- 1차 평가 결과에 따라 상위 10%에 한해서 2차 평가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함. 상위 10%에 해당하는 수행기관은 1년동안의 노인 일자리 사업을 수행하면서 경험한 내용이나 수범사례에 대하여 성과평가보고서를 작성하여 2차 평가에 응모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함.
- 2차 평가는 각 수행기관이 작성한 사례보고서를 근거로 사업유형별로 노인 일자리 평가위원회에서 시도별 우수기관을 선정함. 각 시도별 사업유형 우수기관에 대해서는 현지 실사를 실시하여 사업유형별로 최우수기관 각 1개기관을 선정함.
- 1차 평가결과 하위 20%에 해당하는 수행기관이 2년 연속 하위 20%에 포함될 경우에는 업무수행 개선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3년 연속 20%에 포함될 경우에는 해당기관에 실사를 통하여 예산지원 등의 불이익을 줄 수 있도록 함.
- 시도 평가와 시군구 평가는 노인일자리 사업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시도 및 시군구 평가를 직접 수행함.

○ 현행 평가지표체계의 개선

- 현행 평가지표 체계에는 수행기관의 성과를 적실하게 평가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지표와 구체성이 떨어지는 지표가 포함되어 있음. 시도 및 시군구 평가에 관할 자치단체의 주요 역할과 관련성이 떨어지는 평가항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나타남.
- 노인 일자리 사업을 1차와 2차 평가로 구분하는 평가 시스템을 유지하고, 1차 평가를 핵심적인 계량 평가지표위주로 단순화하여 피 평가기관의 평가관련 부담과 평가비용을 최소화한다는 목표를 위해서는 평가지표의 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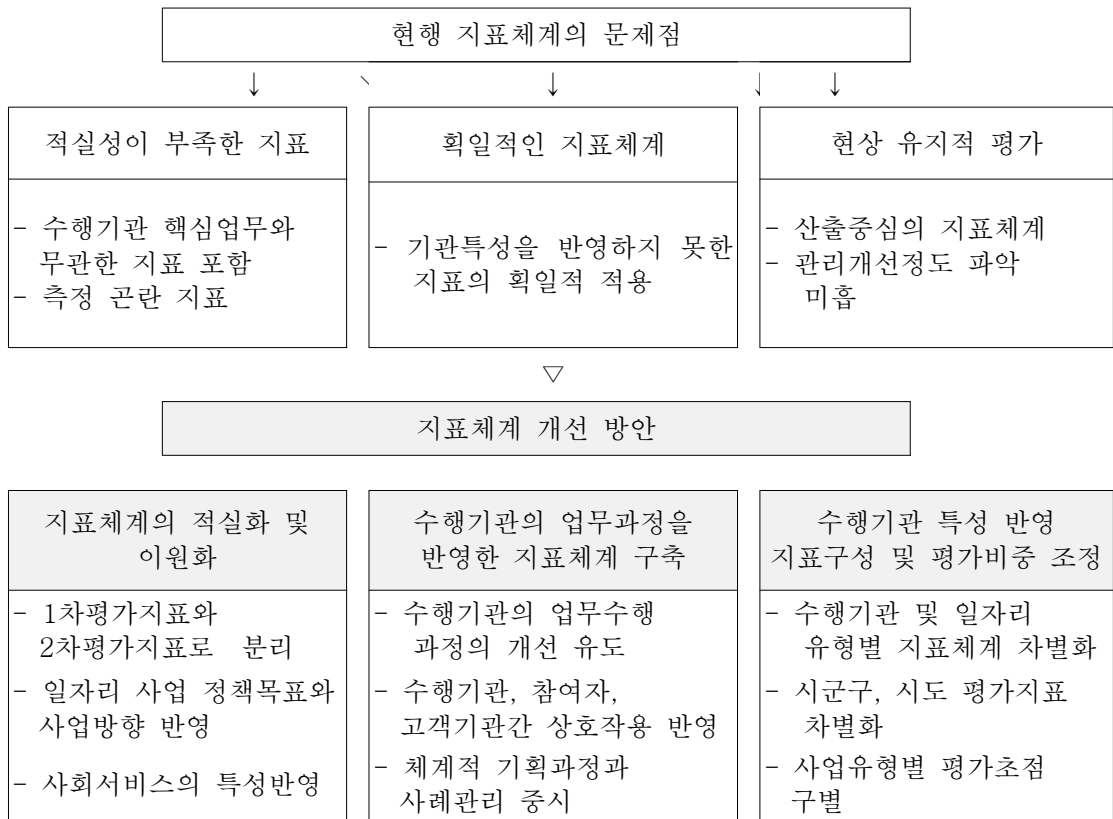
<그림 2> 노인 일자리 사업 평가체제 개선방향

조정이 필요함.

- 평가지표의 구성은 일종의 노인 일자리 서비스의 품질관리를 위한 설계표준 성격을 띤 지표체계로 구성함. 여기에서 설계표준이란 서비스 품질을

확보하기 위한 장치로서 의미를 지님. 제품의 제조과정에서 제품의 물리적 특성과 성분을 엄격하게 규격화할 수 있는 구체적인 상품(goods)과는 달리 서비스의 경우 서비스를 구성하는 내용 하나 하나를 명확하게 규격화할 수 없음. 일반적으로 서비스는 제품과 달리 서비스의 무형성으로 인한 평가기준의 구체성 한계, 이질성으로 인한 평가기준의 표준화 한계, 생산과 소비의 비분리성에 따른 평가기준의 객관성 한계 등이 나타남(김통원,윤재영, 2005).

- 특히 서비스 제공자와 서비스 이용자간 상호작용에 의해서 서비스 이용자들의 만족도가 상당부분 좌우되기 때문에, 서비스를 구성하는 내용적 특성에 상응하는 평가지표보다는 그러한 서비스를 산출하여 낼 수 있는 핵심적인 여건과 과정에 대해 기능적으로 대응하는 평가지표를 구성하는 노력이 필요함.
- 따라서 노인 일자리 사업을 평가하기 위한 평가지표로 수행기관의 일자리 사업의 기획과 홍보, 참여자 선발과 교육, 수행기관 구성원에 대한 교육, 목표 달성정도 등을 포함하여 전 업무영역을 체계적으로 상시적으로 점검하고 검토할 수 있는 지표 등으로 구성함.
-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평가지표체계를 다음의 세 가지 측면에 초점을 맞추어 구성할 수 있을 것임. 첫 번째 평가초점은 노인 일자리 사업과 관련한 각 수행기관들이 최소한도 조건(minimum requirements)으로서 갖추어야 할 기본적인 요건을 어느 정도 충족하였는가를 평가함. 다시 말하면 최소한도의 노인 일자리 사업 서비스를 창출할 수 있는 업무 프로세스를 사전에 규정하여 그 업무 프로세스에서 업무수행 단계별로 요구되는 주요 업무구성요소를 성과관리지표로 전환함. 따라서 각 수행기관이 노인 일자리 사업을 수행하면서 기획부터 최종 평가와 환류에 이르기까지 각종 단계별 수행기능을 검토하고 평가하는 시스템을 구축함.
- 두 번째 평가초점은 핵심 산출물 달성여부임. 현행 시스템하에서 노인 일자리 사업을 추진하면서 당초에 계획하였던 목표(노인 일자리 마련)를 어느 정도 달성하였는가는 노인 일자리 사업이 궁극적으로 달성하여야할 목표 즉 유일한 최종성과물라고 보기는 어려움. 그러나 현재 매우 취약한 노인 일자리 기회, 열악한 노인 일자리 사업 인프라와 사회 경제적 여건



<그림 3> 노인 일자리 사업 지표체계 개선방향

등을 고려할 때 지방자치단체나 수행기관의 노력 등에 의하여 계획했던 목표를 달성하는 것은 노인 일자리 사업 전체를 평가하는 중요한 평가요소임에는 분명함. 따라서 기획당시에 책정하였던 일자리 사업 목표, 주로 창출한 일자리 개수 등이 주요 검토 대상이 될 것임.

- 세 번째 평가 초점은 각 수행기관이 나름대로의 기관 여건 및 지역적 상황 등을 고려하여 수행한 업무추진 경험과 노력방식에 대한 평가임. 각 기관은 평가를 위하여 사전에 설정한 객관적인 지표로 나타낼 수 없는 각 기관별 업무수행경험을 가지고 있음. 이러한 기관별 정보와 노력도를 평가하고 필요한 경우에 각 기관이 보유한 우수한 know-how와 정보를 가능한 널리 홍보하여 다른 수행기관으로 하여금 벤치마킹 대상으로 삼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따라서 이와 관련된 평가지표는 현재 수행기관의 여건이나 역량을 고려할 때 모든 수행기관이 충족하기는 어렵다 할지라도 나름대로의 노력을 통하여 예외적으로 성취한 성과나 노력정도를 측정하고 이러한 경험을 다른 수행기관이 수범사례로 따르도록 유도함으로써 각

수행기관의 미래 목표나 운영방향을 제시하는 안내 역할을 수행하게 함.

□ 노인일자리 성과관리 지표체계 주요 내용 및 유형별 지표체계

○ 업무 프로세스 설계표준을 통한 성과관리

- 노인 일자리 사업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각 수행기관이 담당하는 노인 일자리 사업 추진과정을 일련의 프로세스로 설정함. 일반적으로 프로세스란 하나이상의 투입을 받아들여 이용자에게 가치 있는 결과를 제공하는 행동들의 집합을 의미함.
- 따라서 노인 일자리 사업을 추진하는 수행기관이 각 단계별 프로세스를 따라 운영할 때 생산되는 서비스의 품질은 물론 의도한 성과까지 담보될 수 있다고 전제함.

○ 노인 일자리 사업의 추진 프로세스 구성요소

- 일반적으로 복지 서비스 프로그램을 추진하는 업무 프로세스를 구성하는 주요 성과평가 요소는 다양한 종류의 투입(inputs: 자원, 인력, 지원)들이 의도한 산출(outputs)로 전환되고 효과(outcomes)를 나타내기 위해 요구되는 과정으로 구성됨. 따라서 적합한 목표설정과 기획, 인적, 물적 자원의 동원·관리·활용, 서비스 대상자들의 공정한 선정과 관리, 수요처 등 고객기관 관리, 사업수행 진행과정, 결과 모니터링과 평가 및 환류작업 등과 같은 일련의 활동들이 연결고리를 이루어 진행됨.
- 따라서 노인 일자리 사업을 평가지표에 업무수행 과정을 반영한 접근방법을 적용할 경우 기획 및 사업목표 설정과정, 참여자 모집 및 교육과정, 세부적 사업수행과정, 자원확보 과정 등과 연관된 다음과 같은 활동들이 주요 평가대상이 되고 하위평가내용이 평가지표로 구체화될 수 있음.
- 기획 및 사업목표 설정과정 관련 활동
 - 사업 기획과정에서 지역 및 참여자 욕구 파악과 반영
 - 지역내 관련 사업추진실태 및 노동시장 조사
 - 사업 기획과정에서 전년도 사업추진 결과에 대한 평가 및 검토사항 반영

〈표 2〉 노인 일자리 사업 추진과정과 주요 평가 내용

노인 일자리 사업 추진과정	주요 활동 내용	평가 내용	평가 구분	시기
기획 및 사업목표 선정	① 전년도 사업평가	- 전년도 추진실적 자체평가 - 자체평가결과 사업계획반영	1차 평가	3월
	② 사전조사	- 이해 당사자 의견조사 - 공급기관 조사	1차 평가	3월
	③ 구체적 목표 설정	- 구체적 사업목표제시 및 측정방식 제시	1차 평가	3월
	④ 지역특성을 반영한 사업계획 수립	- 사업계획 및 목표의 독창성	2차 평가	추가
참여자 모집 및 교육과정	⑤ 투명한 참여자 모집	- 공개모집 여부 및 홍보매체의 적극적 활용	1차 평가	
	⑥ 공정한 참여자 선정	- 선발기준 적용 여부 - 중도탈락시 대기순위 적용여부	1차 평가	
	⑦ 참여자 교육	- 소양 및 직무교육 준수 여부 - 보수 재교육 실시 여부	1차 평가	
사업수행과정	⑧ 참여자 관리	- 참여자 간담회 실시 여부 - 사후관리 체계 구축 여부(??) - 수혜자 관리체계 구축 여부(??) - 급여관리의 적정성 - 적시 전산입력 여부 - 상해사고 발생여부	1차 평가	
	⑨ 수요처 등 고객기관 관리	- 수요처 의견 수렴체계 구축여부 - 수요처 강사로 지급여부	1차 평가	
	⑩ 사업내용 내실화 노력	- 사업 내용의 차별화 노력(??) - 외부자원 연계 노력 - 사업연장 노력	2차 평가	
사업목표달성	⑪ 사업목표 달성	- 계획대비 사업목표량 달성도 - 1인당 월 매출액 - 취업자수	1차 평가	
사업평가 및 환류	⑫ 자체평가 및 만족도 조사	- 자체평가 실시 여부 - 만족도 조사 실시 여부 - 문제점 및 해결방안 마련 여부	1차 평가	

- 구체적인 사업목표치의 제시
 - 지역 특성을 반영한 사업내용 및 목표 설정
- 참여자 모집 및 교육 과정 관련 활동
- 참여자 모집과정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제도 구축 및 운영
 - 참여자에 대한 공개모집과 적실한 홍보활동

- 참여자에 대한 의무적 또는 추가적인 교육실시
- 사업수행과정 및 고객관리 관련 활동
 - 참여자에 대한 적실한 관리 노력(안전관리, 급여관리, 사후관리)
 - 참여자들의 의견수렴
 - 수요처 발굴 및 고객기관에 대한 적극적 관리 노력
- 자원 확보 및 관리 활동 (지방자치단체)
 - 자치단체의 노인 일자리 사업 수행을 위한 물적 자원(예산) 확보 노력
 - 자치단체의 노인 일자리 사업 수행을 위한 전담인력 확보 노력
- 평가 및 사후 관리 관련 활동
 - 지난 사업추진과정에 대한 평가와 환류노력
 - 참여자 및 고객 만족도 조사 및 결과를 반영한 제도 및 사업내용 개선

□ 노인 일자리 사업 상시 평가체제

○ 노인 일자리 사업에 대한 상시평가체제 기본방향

- 노인 일자리사업의 상시평가관리 방향은 서비스 공급기관에서 수행하는 업무처리방식을 효율화하는 방법과 활동을 표준화하여, 그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삼을 수 있음. 이러한 평가체제는 일종의 노인 일자시 서비스를 생산하는 데 요구되는 설계표준임(안영진, 2007).
- 따라서 위에서 제시한 노인 일자리 사업 추진과정상 요구되는 주요 핵심 업무를 재구성하고 관련된 핵심 지표를 중심으로 해당 업무가 추진되는 분기에 평가를 실시함. 결국 성과지표의 제출과 검토는 주어진 평가들에 따라 1년 계획에 따라 연중에 걸쳐 진행.
- 상시평가체제는 노인인력개발원이 전담하여 추진함. 노인 일자리 사업에 대한 평가는 상시적인 평가결과와 성과평가보고서(사례관리포함) 평가 그리고 현장확인 및 평가결과 등이 종합적으로 포함됨.

○ 상시평가 수행기관 : 노인 인력개발원내 노인 일자리 품질관리 및 평가 센터

- 노인인력개발원에 노인일자리 품질관리 및 관리센터(팀)을 설치. 상시적인 정보수집, 분석, 비교, 환류 등의 작업을 전담하여야 함. 특히 사업평가와 관련하여 일선 수행기관 및 기초자치단체에 대한 컨설팅 업무를 수행하는 품질관리 체제로의 전환이 필요함. 이를 위한 인력, 조직, 예산 등이 뒷받침되어야 함.

- 수집된 정보는 보건복지부에 제공함.

□ 노인 일자리 평가위원회 구성과 기능

○ 노인 일자리 사업 평가위원회의 구성

- “노인 일자리 사업 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는 보건복지부 장관산하에 구성함. 구성인원은 복지부 노인 일자리 사업관련 담당자(3인), 노인인력개발원 관계자(3인), 외부전문가 (학계 6인 및 시민단체 3인등 총 9인) 등 총 15인으로 구성함.

- 평가 위원회는 연초에 구성하고 상하반기별로 노인인력개발원 소속 평가위원이 평정한 시도별, 시군구별, 수행기관별 상시평가자료를 검토 확인함.

- 시도평가 작업에는 보건복지부 관계자 1인, 노인인력개발원 관계자 1인, 학계(2인), 시민단체 및 관련기관(1인) 등 각 5인으로 구성된 3개 지역분과 위원회로 운영함. 평가의 일관성과 업무수행의 편의성을 위하여 노인인력개발원 관계자는 16개 시도 평가에 모두 참가할 수도 있음. 3개 지역 평가 위원회는 16개 광역자치단체를 균분하여 평가를 실시함.

- 해당 광역자치단체를 평가하는 지역분과위원회는 해당 지역내 시군구에 대한 평가도 동시에 담당함. 해당 광역자치단체 소속 시군구를 평가할 때마다 해당 광역자치단체 소속 노인 일자리 사업 담당 관계자 1인이 각각 지역분과 평가위원회에 참여함. 따라서 각 광역자치단체별 시군구 평가위

원은 총 6인으로 구성함. 다만 평가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해당 시도 공무원인 평가위원은 평가행정업무를 지원하고 직접적인 시군구 평정 작업에는 관여하지 않을 수 있음.

○ 평가위원회의 운영

- 평가위원회의 운영 및 실무평가작업은 노인인력개발원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위탁하여 진행함. 노인인력개발원은 평가지표, 평가일정, 평가위원을 확정하여 보건복지부장관과의 위탁계약을 통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 보고함.

○ 시·도 광역자치단체 노인 일자리 사업 평가

- 평가위원회는 현재 중앙평가위원회와 시도 평가위원회 분담하는 역할을 통합 수행하여 시도 일자리사업에 대한 평가와 시군구 일자리 사업에 대한 평가를 동시에 실시함.
- 시도에 대한 평가는 노인 인력개발원 품질관리평가센터가 핵심지표별로 작성한 상시평가결과를 사전에 검토한 후 16개 시도를 3분하여 현지 평가를 실시함. 현지평가는 작성한 핵심지표를 확인하고 현지 실정, 지역적 특수성 등을 감안하여 평가함.
- 지역분과위원회는 해당 시도에 대한 평가를 한 결과를 해당 시도 평가위원을 제외한 15인 전체평가위원회에 평가결과를 제출하고 3개 우수 시도를 선정함.
- 평가시기는 차년도 1월 또는 2월로 정함. 현재와 같이 10월이나 11월로 할 경우 회계연도인 1-12월까지의 성과를 평가할 수 없음. 따라서 1-12월까지의 성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하기 위해서는 평가시기를 평가대상시기 다음연도 초에 하는 것이 바람직함.

○ 시군구 일자리 사업 평가

- 시군구에 대한 평가는 지역평가위원회가 상시평가자료를 근거로 차년도 1-2월 중에 현장방문하여 실시함. 시군구에 대한 현지평가대상은 시군구에 대한 상시평가결과를 통하여 선정된 시도 당 3개 상위 시군구만을 대

상으로 실시함.

- 평가위원을 3분하여 해당 시도를 방문하여 시도를 평가할 때, 해당 시도 소속 상위 3개 시군구에 대한 현지평가를 동시에 실시함. 시군구 평가에는 평가위원에 각 시도 담당과장을 평가위원으로 참석시킴. 평가의 객관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도 평가위원의 의견을 수렴하되 평정작업에는 참가를 제한할 수 있음.
- 전체 평가위원회에서 시도별 우수 시군구 1곳 선정, 전체 시군구중 우수 시군구 1곳 선정

○ 수행기관 평가절차

- 수행기관에 대한 평가는 노인 일자리 사업 추진 과정에 따라 해당 업무가 수행되는 각 분기별로 자료를 입력하고 노인 인력개발원에서 총괄하여 평가를 실시함.
- 상시평가결과 각 일자리 사업 유형별로 상위 10%안에 해당하는 수행기관에 한하여 전년도에 추진한 사업에 대한 종합보고서, 사례관리 등에 대한 내용으로 성과평가보고서를 제출할 자격을 부여. 전체적으로 약 200여개의 수행기관을 2차평가 대상으로 선정함(???)
- 수행기관이 제출할 성과평가보고서는 수행기관의 사업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함. 특히 상시평가체제를 통하여 구체적으로 나타낼 수 없는 기관별 특화된 노력정도, 지역특성을 반영한 사업수행결과, 외부자원이나 지역 유관기관 등과 협력을 통한 사업수행과정 및 결과, 참여자 개인 및 집단 그리고 고객기관에 대한 사례관리내용 등을 보다 자세하고 구체적으로 기술하는 것을 내용으로 함.
- 사례관리가 포함된 성과평가보고서를 제출한 수행기관에 대한 평가를 노인 인력개발연구원이 시행하고 이중 시도별 5개 사업유형별로 1개 기관씩 선정함(80개 내외). 따라서 16개 시도별 각 사업유형별로 1개 기관씩 우수기관을 성과평가보고서 결과에 따라 선정함.

상시 노인일자리 사업 평가관리체계 운영

- 노인인력개발원에 노인 일자리 사업 품질관리평가센터 운영
- 노인 일자리 사업과 관련하여 시도, 시군구, 수행기관별 1차평가지표를 확정
- 측정시스템 구축, 월별 평가지표별 시도, 시군구, 수행기관별 실적 측정 및 평정
- 반기별(분기별?) 시도, 시군구, 수행기관별 평가결과 보고 및 평가위원회 운영
- 반기별(분기별?) 평가결과에 대한 종합적 의견을 제시



노인 일자리 사업 평가위원회 구성

- 1년 단위로 복지부 3인, 민간전문가 9인, 노인인력개발원 3인으로 구성
- 연도별 상시평가지표체계의 확정
- 품질관리평가센터가 측정한 상시지표체계별 실적을 반기별로 검토 확인
- 지역분과위원회로 구성
- 시도평가, 시군구평가, 수행기관평가 평정 및 확인, 우수기관 확정 업무 담당



시도 노인 일자리 사업 평가

- 시도별 상시평가결과 확인
- 지역분과위원회 구성. 현지 확인
- 전체 평가 위원회에서 우수 시도 선정



시군구 노인 일자리 사업 평가

- 시군구별 상시평가결과 확인
- 시도별 3개 우수 시군구 선정
- 지역분과위원회가 시도 평가시 3개 시군구에 대한 평가 확인
- 전체 평가 위원회에서 우수 시군구 선정



수행기관 노인일자리 사업 평가

- 수행기관별 상시평가결과 확인 사업 유형별 상위 10% 우수 수행기관 선정
- 선정된 상위 10%를 대상으로 우수 수행기관별 성과평가보고서 수집 및 평가
- 평가위원회에서 우수 수행기관 선정 및 현장 확인



우수 기관 확정, 인센티브제공, 우수사례 관리

- 우수 시도, 시군구, 수행기관에 대한 충분한 보상 확보
- 우수 기관별로 수행한 사례에 대한 분석보고서를 작성하여 수행기관에 배포
- 피평가기관의 의견을 수렴하여 지속적인 상시평가지표체계 개선

<그림 4> 노인 일자리 사업 품질관리 및 성과평가를 위한 단계별 추진 내용

- 지역분과위원회가 시도 평가 방문시 선정된 시도별 우수기관을 확인하는 작업을 진행. 현장확인 결과를 전체 평가위원회에서 취합하여 전체 시도

별 사업유형별 우수 기관중에서 사업유형별로 최우수기관 1개 기관씩을 최종적으로 선정함.

- 성과평가보고서 주요 내용

- 기관의 특성, 지역적 특성, 주요 사업 내용 요약
- 추진사업중 기관의 독특한 추진 노력 및 장애 극복 내용
- 지역 유관기관 등 외부자원을 활용한 사업추진내용
- 참여자 및 고객기관 등에 대한 사례관리 내용
- 타 수행기관에 대한 수범사례로 제시할 수 있는 내용

참고문헌

김명수, 2003, 공공정책평가론, 박영사

김통원 외, 2005, 사회복지 서비스 품질관리

안영진, 2007, 경영품질론, 박영사

양기용, 김상묵, 1998, 행정서비스 성과평가제도의 도입과 적용, 한국정책학회보, 제7권 제3호

이진주외, 1997, 정책평가를 위한 새로운 모색, 나남출판

정정길, 1997, 정책학원론, 대명출판사

Busson, Terry, 1987, "The Need for Program and Performance Evaluation in Local Government," In Terry Busson and Philip Coulter, eds., Policy Evaluation for Local Government, N.Y.: Greenwood Press

Hatry, Harry, P., 1992, How Effective Are Your Community Services?, Washington D.C.: The Urban Institute and ICMA

제2부. '07년 평가체계 및 평가지표 개발(안)¹⁾

1. '07년 노인일자리사업 평가 추진방안

□ 평가목적

- '07년 노인일자리사업 추진실태의 종합점검 및 분석을 통한 발전방안 모색
 - 일자리사업 프로그램 평가를 통한 우수사업 수행기관의 포상, 우수사업의 분석 및 보급, 부진사업의 선정 및 분석에 따른 지원·관리 방안 마련
 - 지자체 평가를 통한 민·관 협력 우수사례 발굴로 노인일자리사업의 활성화 도모

□ 현행 평가체계 문제점

- 평가대상 과다로 적실한 평가 곤란
- 시도 평가위원회의 부실 운영 및 교차평가의 문제
 - 평가결과의 신뢰성 부족
- 공익, 교육, 복지형 등 다수 사회적 일자리 사업의 성과지표 및 질적 평가 지표 미흡 등 평가지표의 변별력 부족
- 각 유형 내에 존재하는 다양한 사업의 특수성 및 지역 특수성 반영 곤란
- 평가결과에 따른 피드백 부족
 - 보상 및 처벌수준 미약, 우수사례 보급 및 확산 부족

1) 제1부에서 제시된 노인일자리사업의 상시관리체계는 중장기적 과제로 검토함을 전제로, 제2부에서는 '08년에 시행될 '07년 노인일자리사업의 평가추진 방향 및 지표구성 내용을 수록함. 2부 또한 1부 원고내용을 토대로 진행하였으며 평가자문위원회를 통해 논의된 결과임.

※ 평가자문 위원회는 전북도청 김석면, 대구시청 문애경, 인천군청 이태주, 청도군청 김유선, 음성군노인종합복지관 김옥일, 관악노인종합복지관 김은미, 거창노인복지센터 유수상, 대한노인회 신범수, 강남시니어클럽 박문규, 시흥시니어클럽 김영준, 부천시니어클럽 권치영 실장으로 구성됨

□ '07년 평가개선방안

- 1안) 현행 평가체계 일부 보완·수정
 - 시·도 평가위원회의 운영방식 강화 및 일부 문제지표 개선
 - 평가방식의 변화로 인한 현장의 혼란을 방지한다는 장점은 있으나, 현행 평가의 근본적 문제 다수는 미해결
- 2안) 추진실적(전산) + 우수사례 공모 및 추천
 - 추진실적분석을 통해 일정 수준 이상의 추진성과를 보이는 사업에 한하여 우수사례 공모 및 추천자격 부여
 - 우수사업에 대한 분석과 시상은 가능하나 전산입력자료의 양적 성과지표 부족으로 사실상 평가가 아닌, 우수사례 발굴에 그쳐 일자리사업의 하향 평준화 우려
- 3안) 1차 양적 평가 + 2차 질적 평가(1안+2안)
 - 양적지표에 대한 1차 전산평가를 통해 일정 비율 이내에 드는 사업에 한하여 응모 또는 추천 자격 부여 후 2차 서술 평가 실시
 - 업무추진 과정상의 필수업무 및 사업추진 결과 등을 중심으로 하는 1차 전산평가를 통해 일자리사업의 하향평준화 방지, 사업운영 및 지원 과정의 내용적 충실성 등을 중심으로 하는 2차 평가를 통해 상향평준화 유도
 - 부진 프로그램은 1차 평가결과에 따라 선정 및 부진 원인 분석 가능하며, 우수 프로그램은 2차 평가지표에 따라 다양한 업무추진 영역에서의 우수사례 발굴 가능
 - 적정 평가대상에 대한 적실한 평가가 가능하여(2차 평가), 평가의 신뢰성 확보 가능
 - 그러나 현장의 2차 평가부담 등 평가의 복잡성이 증가한다는 단점
- 4안) 품질관리를 위한 상시평가체계로의 전환
 - 사업심사, 모니터링, 컨설팅, 평가의 기능을 하나의 지속적이고 상시적인 흐름 속에서 수행하는 방식으로, 사업진행 각 단계에서 요구되는 자료를 제출하면(실적입력 및 파일업로드) 그에 따른 평가와 조치, 컨설팅이 주어지는 방식
 - 인력 및 예산 등의 체계구축이 수반되는 만큼 노인일자리아업 평가의 중요성 등에 대한 논의를 통해 '08년 사업 이후부터 검토 가능한 방안

□ '07년 평가개선 추진방향: 제3안

○ 1차 평가

- 업무추진 과정상의 필수업무 및 사업추진 결과를 중심으로 평가
- 피 평가자는 자체평가 결과를 전산 상에 입력하며, 프로그램 평가의 경우 시군구가, 시군구 평가의 경우 시도가 자체평가결과의 확인 및 점수조정
의 책임주체가 됨
- 위 과정의 적정여부 확인을 위해 개발원에서 프로그램 및 시군구를 무작위 선정하여 확인하며, 부적정 평가 적발 시 해당 시군구 또는 시도에 감점 부여함
- 1차 평가 결과 특정 비율 이내 해당 프로그램 또는 시군구에 한해 2차 평가 응모 또는 추천 자격 부여
- 2차 평가 응모대상 비율 산출시, 도시와 농어촌 분리

○ 2차 평가

- 사업운영 및 지원 과정의 내용적 충실성을 중심으로 평가하며, 프로그램 평가의 경우, 1차 지표 중 성과영역 중 일부 지표 재평가함
- 기존 체계에서 평가되지 못했던 사업기반의 확보 내용 및 양적, 질적 자구노력 등이 평가되며, 동일 유형 내에 존재하는 다양한 사업의 특수성들이 반영되어 평가됨
- 제출된 2차 평가 기술서에 대해 중앙평가위원회에서 평가하며, 각 평가문항에 대해 탁월(4)-우수(3)-보통(2)-미흡(1)의 점수 부여

○ 우수 프로그램 보급 및 부진 프로그램 관리

- 우수 시군구 및 우수 프로그램 선정 시, 시군구 평가는 1차 평가와 2차 평가를 50:50으로 반영하며, 프로그램 평가는 2차 평가 결과만 반영함
- 우수 시군구 및 프로그램은 인센티브 부여와 함께 사례집 발간을 통해 우수사례 보급
- 1차 평가결과 부진 프로그램은 '08년 집중 관리 및 지원 대상으로 선정하여 지속적으로 지도점검 및 컨설팅 실시

2. '07년 노인일자리사업 평가지표 구성(안)

- 붙임 1. 1차 평가지표 구성 및 배점(안)
- 붙임 2. 1차 평가지표 세부기준표(안)
- 붙임 3. 2차 평가지표(안)

붙임 1. 1차 평가지표 구성 및 배점(안)

노인일자리사업 지자체(시·도, 시·군·구) 1차 평가지표

평가영역	평가내용	세부 평가지표	적용 지자체	비고
단체장 관심도 (3)	노인일자리사업 활성화를 위한 지자체 단체장의 사업수행 의지 및 관심 정도	노인일자리사업 담당자 업무지속성	공통	
		노인일자리사업 관련 별도 예산 확보	공통	
		기타 지방자치단체장 관심도	공통	
사업운영 및 지원의 충실성 (5)	노인일자리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한 지자체의 사업관리 및 운영지원체계 구 축 및 노력, 협조 여부	노인일자리사업 지역협의체 구축 및 운영	시·군·구	
		노인일자리사업 홍보실적	시·군·구	
		사업관리 충실성	공통	
		사업수행기관 지원	시·군·구	
		업무시스템 입력 충실도	공통	가점
사업추진 성과 (4)	일자리사업의 양적, 질적 목표 달성 여부 및 지원 성과	사업 목표량 달성도	공통	
		참여자 및 수요처 만족도	시·도	
		시군구 업무성과	시·도	
		위탁 수행기관 업무성과	시·군·구	
기타 (3)	일자리사업 추진 관련 지침 권장사항 협조 여부 등	자립지원형 추진실적	공통	가점
		여성노인 참여비율	공통	가점
		질적 평가점수	시·도	

노인일자리사업 프로그램 1차 평가지표

평가영역	평가내용	평가항목	적용 유형	비고
사업계획 적절성 (3)	사업 목표가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가? 사업내용이 독창적이고 지역특성을 반영하고 있는가?	1. 지역육구 및 수요(시장)조사를 실시하였는가?	공통	
		2. 추진계획의 단계별 구체성이 확보되었는가?	공통	
참여자 모집 및 선정 적정성 (3)	참여자 모집 및 선발이 공평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졌는가?	3. 지역특화 또는 신규 아이템을 사업화하였는가?	공통	가점
		1.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공개모집을 실시하였는가?	공통	
		2. 공정한 선발기준에 의해 참여자를 선발하였는가?	공통	
참여자 교육 충실성 (3)	서비스 제공자로서 소양 및 전문성 함양을 위한 교육을 충실히 제공하였는가?	3. 중도탈락 발생 시 대기 순위에 따라 참여자를 충원하였는가?	공익형	
		1. 소양교육 및 직무교육시간을 준수하였는가?	공통	
		2. 보수(재)교육을 실시하였는가?	교육형 복지형	
사업수행 및 관리 충실성 (9)	참여자 및 수요처 또는 수혜자 등의 관리가 충실히 이루어지고 있는가?	3. 외부전문강사를 활용하였는가?	교육형	
		1. 참여자 간담회를 실시하였는가?	공통	
		2. 수요처 의견수렴체계를 구축하고 있는가?	교육형	
		3. 수혜자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있는가?	복지형	
		4. 취업자의 사후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있는가?	파견형	

평가영역	평가내용	평가항목	적용 유형	비고
사업수행 및 관리 충실성(계속)	사업점검 및 평가가 충실히 이루어지고 있는가?	5. 자체평가 및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였는가?	공통	
		6. 연중 지속적으로 사업을 운영하였는가?	시장형	
	사업 내실화를 위해 노력하였는가?	7. 강사료(이용료) 지급 수요처를 확보하고 있는가?	교육형 복지형	가점
		8. 외부자원의 연계 또는 활용실적이 있는가?	공통	가점
		9. 기본개월 수 이외에 사업을 연장하여 실시하였는가?	공익형 교육형 복지형	가점
사업성과 (3)	사업목표에 부합하는 사업효과가 발생하였는가?	1. 사업목표를 달성하였는가?	공통	
		2. 1인당 연간 매출액	시장형	
		3. 취업자 수	파견형	가점

노인일자리사업 지자체(시·도, 시·군·구) 1차 평가지표 배점

평가영역	세부 평가지표	시도	시군구	비고
	총 점(가점포함)	100(105)	100(105)	
단체장 관심도	노인일자리사업 담당자의 업무지속성	5	5	
	노인일자리사업 관련 별도 예산 확보 여부	12	10	
	기타 단체장의 관심도	8	5	
사업운영 및 지원의 충실성	노인일자리사업 지역협의체 구축 및 운영	해당사항 없음	5	
	노인일자리사업 홍보실적	해당사항 없음	5	
	사업관리 충실성	15	15	
	사업 수행기관 지원	해당사항 없음	15	
	업무시스템 입력 충실도	5	5	
사업추진 성과	사업 목표량 달성도	25	25	
	참여자 및 수요처 만족도	10	해당사항 없음	
	시군구 업무성과	10	해당사항 없음	
	위탁 수행기관 업무성과	해당사항 없음	10	
기타	자립지원형 추진실적	3	3	가점
	여성노인 참여비율	2	2	가점
	질적 평가점수	10	해당사항 없음	

노인일자리사업 프로그램 1차 평가지표 유형별 배점

〈공익형〉

평가영역	평가항목	배점			비고
	총점	총점	비중	점수 100(106)	
사업계획 적절성	사업계획의 적절성	10	100%	10	
	지역특화 또는 신규 아이템 사업화		-	2	가점
참여자 모집 및 선정 적정성	다양한 매체 활용을 통한 공개모집	20	50%	10	
	선발기준 준수 및 대기순위 적용		50%	10	
참여자 교육 충실성	교육시간 준수	10	100%	10	
사업수행 및 관리 충실성	참여자 간담회 실시	25	40%	10	
	자체평가 및 만족도 조사		60%	15	
	외부자원의 연계 또는 활용실적		-	2	가점
	사업연장 실시		-	2	가점
사업성과	사업목표량 달성도	35	40%	14	
	일자리 지속성		60%	21	

〈교육형〉

평가영역	평가항목	배점			비고
	총점	총점	비중	점수 100(108)	
사업계획 적절성	사업계획의 적절성	10	100%	10	
	지역특화 또는 신규 아이템 사업화		-	2	가점
참여자 모집 및 선정 적정성	다양한 매체 활용을 통한 공개모집	10	50%	5	
	선발기준 준수		50%	5	
참여자 교육 충실성	교육시간 준수	20	30%	6	
	보수(재)교육 실시		50%	10	
	외부전문강사 활용		20%	4	
사업수행 및 관리 충실성	참여자 간담회 실시	30	30%	9	
	수요처 의견수렴체계 구축		30%	9	
	자체평가 및 만족도 조사		40%	12	
	강사료(이용료) 지급 수요처 확보		-	2	가점
	외부자원의 연계 또는 활용실적		-	2	가점
	사업연장 실시		-	2	가점
사업성과	사업목표량 달성도	30	50%	15	
	일자리 지속성		50%	15	

〈복지형〉

평가영역	평가항목	배점			비고
	총점	총점	비중	점수 100(108)	
사업계획 적절성	사업계획의 적절성	10	100%	10	
	지역특화 또는 신규 아이템 사업화		-	2	가점
참여자 모집 및 선정 적정성	다양한 매체 활용을 통한 공개모집	10	50%	5	
	선발기준 준수		50%	5	
참여자 교육 충실성	교육시간 준수	20	40%	8	
	보수(재)교육 실시		60%	12	
사업수행 및 관리 충실성	참여자 간담회 실시	30	30%	9	
	수혜자 관리체계 구축		30%	9	
	자체평가 및 만족도 조사		40%	12	
	강사료(이용료) 지급 수요처 확보		-	2	가점
	외부자원의 연계 또는 활용실적		-	2	가점
	사업연장 실시		-	2	가점
사업성과	사업목표량 달성도	30	50%	15	
	일자리 지속성		50%	15	

〈시장형〉

평가영역	평가항목	배점			비고
	총점	총점	비중	점수 100(104)	
사업계획 적절성	사업계획의 적절성	20	70%	14	
	추진계획의 단계별 구체성 확보		30%	6	
	지역특화 또는 신규 아이템 사업화		-	2	가점
참여자 모집 및 선정 적정성	다양한 매체 활용을 통한 공개모집	10	50%	5	
	선발기준 준수		50%	5	
참여자 교육 충실성	교육시간 준수	10	100%	10	
사업수행 및 관리 충실성	참여자 간담회 실시	25	20%	5	
	자체평가 및 만족도 조사		30%	7.5	
	사업 지속성		50%	12.5	
	외부자원의 연계 또는 활용실적		-	2	가점
사업성과	사업목표량 달성도	35	40%	14	
	1인당 연간 매출액		60%	21	

〈인력파견형〉

평가영역	평가항목	배점			비고
	총점	총점	비중	점수 100(110)	
사업계획 적절성	사업계획의 적절성	10	100%	10	가점
	지역특화 또는 신규 아이템 사업화		-	2	
참여자 모집 및 선정 적정성	다양한 매체 활용을 통한 공개모집	10	50%	5	
	선발기준 준수		50%	5	
참여자 교육 충실성	교육시간 준수	10	100%	10	
사업수행 및 관리 충실성	참여자 간담회 실시	35	20%	7	
	취업자의 사후관리체계 구축		50%	17.5	
	자체평가 및 만족도 조사		30%	10.5	
	외부자원의 연계 또는 활용실적		-	2	
사업성과	사업목표량 달성도	35	50%	17.5	
	취업 목표량 달성도		50%	17.5	
	취업 성과		-	6	가점

붙임2. 1차 평가지표 세부기준(안)

지자체 1차 평가 세부지표

- * 시·도 및 시·군·구별 적용 여부는 괄호 안에 명시(시도 및 시군구 모두 해당되는 경우 '공통'으로 표기)
- * 회색 부분은 가점 영역
- * 평가대상 기간: 2007. 1 ~ 2007. 12월까지

[단체장 관심도]

1. 노인일자리사업 담당자의 업무지속성(공통)

평가기준	배점	점 수			
		A	B	C	D
A: 담당자의 평균 업무지속기간 2년 이상 B: 담당자의 평균 업무지속기간 1년 이상 ~ 2년 미만 C: 담당자의 평균 업무지속기간 6개월 이상 ~ 1년 미만 D: 담당자의 평균 업무지속기간 6개월 미만	5	5	4	3	1

* 업무지속기간

- 2007. 1. 1 ~ 2007. 12. 31. 기간 내에 근무했던 업무담당자들의 평균 근무기간

예시: 담당자 A가 2006년 1월부터 2007년 2월까지,

담당자 B가 2007년 3월부터 현재까지 근무하고 있다면,

☞ 14개월(06. 1 ~ 07. 2) + 10개월(07. 3 ~ 07. 12) / 2명 = 12개월

* 증빙자료 : 인사발령대장, 업무분장표 등

※ 승진 또는 질병 등의 부득이한 경우로 인사발령 된 자는 평균근무기간 산정 대상자에서 제외

2. 노인일자리사업 관련 별도 예산 확보 여부(공통)

평가기준	배점		점수				
			A	B	C	D	E
A: 별도확보 예산액이 평가군 내 상위 20% 이상	시도	12	12	10	8	6	4
B: 별도확보 예산액이 평가군 내 상위 40% 이상 ~ 20% 미만							
C: 별도확보 예산액이 평가군 내 상위 60% 이상 ~ 40% 미만	시군구	10	10	8	6	4	2
D: 별도확보 예산액이 평가군 내 상위 80% 이상 ~ 60% 미만							
E: 별도확보 예산액이 평가군 내 상위 80% 미만							

* 재정자립도 및 인구규모를 고려하여 3개 군으로 평가군을 구성한 뒤 각 집단 내에서 상대평가 ('07년 지방자치단체 복지종합평가지 사용된 평가군 적용)

* 별도확보 예산이 없는 지자체를 제외한 나머지 지자체들을 대상으로 상대평가

* 별도확보 예산이 없는 지자체는 0점

* 노인일자리사업 관련 별도 확보 예산 포함 항목

- 노인일자리사업 일자리 수 확대 또는 참여기간 연장을 위한 별도 확보 예산 지원
- 노인일자리사업 운영과 관련하여 자재 또는 시설 구입을 위한 사업비 지원 (시니어클럽 및 대한노인회 취업지원센터 지원도 해당)
- 노인일자리박람회 지원, 노인공동작업장 지원 등

* 증빙자료: 예산서(세부산출내역 포함)

※ 노인일자리사업 지방 부담액 또는 시니어클럽 및 대한노인회의 경상 운영비 지원 등은 해당 안 됨

※ 시·도 및 시·군·구는 자체 실적만 해당. 즉, 시군구의 자체확보는 시군구 평가에만, 시도의 자체확보는 시도 평가에만 반영

3. 기타 지방자치단체장 관심도(공통)

평가기준	배점	점수	
		해당	비해당
노인일자리사업 관련 별도기관 신규설치	8(5)	3(2.5)	0
포상 또는 인사우대		1(0.5)	0
선거공약		1(0.5)	0
노인일자리사업 현장방문		1(0.5)	0
실무자 간담회 참석		1(0.5)	0
발대식 참석		1(0.5)	0

- * 증빙자료: 공문, 결과보고, 사진, 기타 관련 증빙자료
- * 팔호안은 시군구 배점
- * 발대식 참석: '07년 일하는 노인 전진대회 참석도 해당으로 인정
- * 포상의 경우 계획수립도 해당

[사업운영 및 지원 충실성]

4. 노인일자리사업 지역협의체 구축 및 운영여부(시·군·구 해당 지표)

평가기준	배점	점수		
		A	B	C
A: 노인일자리사업 지역협의체가 구성되어 있고 1회 이상 운영됨 B: 별도의 구성은 없으나, 지역복지 협의체 내에 노인일자리사업 분과가 구성되어 있고 1회 이상 운영됨 C: 해당사항 없음	5	5	3	0

- * 증빙자료: 협의체 구성 증빙자료, 회의 개최 관련 공문 및 회의 결과자료 등

5. 노인일자리사업 홍보실적(시·군·구 해당지표)

평가기준	배점	점수			
		A	B	C	D
A: 4가지 이상 해당 B: 2~3가지 해당 C: 1가지 해당 D: 해당사항 없음	5	5	3	1	0

- * 홍보매체: TV, 라디오, 지역신문, 지역소식지, 반상회보, 리플렛, 현수막, 각종 게시판, 인터넷
- * 증빙자료: 홍보 증빙자료
- * 시군구 자체 추진 실적만 해당

6. 사업관리 충실성(공통)

평가기준	배점	점수			
		A	B	C	D
A: 4가지 이상 해당 B: 2~3가지 해당 C: 1가지 해당 D: 해당사항 없음	15	15	12	9	0

- * 사업관리 해당사항: 지도점검, 간담회, 종합평가, 공동교육, 만족도 조사 실시 등
- * 복지부 및 개발원, 수행기관 주관이 아닌, 지자체 자체 추진 실적만 해당
- * 간담회: 세미나, 워크샵도 해당으로 인정
- * 공동교육: 참여자 및 실무자 교육 모두 인정
- * 아래의 증빙서류를 갖추고 있는 경우에만 해당으로 인정
 - 지도점검 및 종합평가: 점검 및 평가 결과보고서
 - 간담회 및 만족도 조사: 결과 보고서
 - 공동교육: 교육계획안, 공문 등

7. 사업 수행기관 지원(시·군·구 해당 지표)

평가기준	배점	점수			
		A	B	C	D
A: 4가지 이상 해당 B: 2~3가지 해당 C: 1가지 해당 D: 해당사항 없음	15	15	10	6	0

- * 사업 수행기관 지원 사항
 - 사무실 및 작업장 무상 임대
 - 우선구매 또는 위탁
 - 업무협조(참여자 선정 및 서비스 대상자 발굴, 수요처 또는 판로확보를 위한 업무협조)
 - 교통편의 제공(차량 등)
 - 장소협조(회의실 등)
 - 인력지원(공익요원 등)

※ 사업비 지원은 별도 확보예산 항목에서 평가되며, 본 항목에는 포함되지 않음.

※ 지자체가 지역 내 독자적인 사업수행기관으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

- 읍면동 또는 노인회, 직영 기관 등 실질적인 직접 사업수행 기관에 대한 지원사항을 평가

8. 업무시스템 입력 충실도(공통)

- * 업무지원사이트 전산입력자료를 근거로 개발원에서 일괄 산출함
- * 전산입력 마감시한의 준수여부로 평가함
- * 총 배점: 5점

1) 시·도: 실적마감 부진 횟수로 평가

※ 실적마감 부진:매월 실적입력 마감율이 전국 평균에 미치지 못하는 시도

※평가대상기간: 2007년 3월 ~12월(10개월)

실적입력 마감 부진 횟수(3점)		예산배분 마감 부진 횟수(2점)	
기준	배점	기준	배점
1회 이하	3	2회 이하	2
2~3회	2	3~4회	1
4~5회	1	5회 이상	0
6회 이상	0		

2) 시·군·구: 관내 프로그램들의 월 실적 마감 처리율 평균으로 평가

※평가대상기간: 2007년 6월 ~12월(6개월)

실적입력 마감 처리율(3점)		예산배분 마감 처리율(2점)	
기준	배점	기준	배점
100% 이상	3	80% 이상	2
90% 이상~100% 미만	2	70% 이상~80% 미만	1
80% 이상~90% 미만	1	70% 미만	0
80% 미만	0		

[사업추진 실적 및 성과]

9. 사업목표량 달성도(공통)

* 업무지원사이트 전산입력자료를 근거로 개발원에서 일괄 산출함

* 각 유형별 사업목표량 달성도의 평균값으로 평가

* 유형별 사업목표량 달성도의 산출방식은 프로그램 평가 참고

평가기준	배점	점수				
		A	B	C	D	E
A : 90% 이상 B : 80% 이상 ~ 90% 미만 C : 70% 이상 ~ 80% 미만 D : 60% 이상 ~ 70% 미만 E : 60% 미만	25	25	20	15	10	5

10. 만족도 조사결과(시·도 해당 지표)

평가기준	배점	점수				
		A	B	C	D	E
A: 90점 이상 B: 80점 이상~90점 미만 C: 70점 이상~80점 미만 D: 60점 이상~70점 미만 E: 60점 미만	10	10	8	6	4	2

- * 개발원에서 실시한 참여노인 및 교육형 수요처 만족도 조사 결과 반영
- * 조사결과를 근거로 개발원에서 일괄 산출함

11. 시군구 및 수행기관 업무성과(공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도 평가: 관내 시군구 평가결과 반영 * 시군구 평가: 관내 프로그램 평가결과 반영
--

- * 1차 평가결과를 근거로 개발원에서 일괄 산출함
- * 유형별 난이도를 감안하여, 조정 환산점수로 반영함
- * 총 배점: 10점

[기타]

12. 자립지원형 추진실적(가점)

평가기준	배점	점수		
A: 15% 이상 B: 10% 이상 ~ 15% 미만 C: 10% 미만	3	3	2	1

- * 업무지원사이트 전산입력자료를 근거로 개발원에서 일괄 산출함
- * 전체 노인일자리사업 중 인력파견형과 시장형 사업 추진실적 평가

* 자립지원형 추진실적 = $\frac{\text{자립지원형 참여자수}}{\text{전체 참여자수}} \times 100$

- 공익, 교육, 복지형, 시장형 참여자수: 1회라도 급여를 지급받은 인원 모두 포함
- 인력파견형 참여자수: 교육을 이수 받은 인력풀 구성원 수로 산정

13. 여성노인 참여비율(가점)

평가기준	배점
- 전국 평균이상일 경우 : 2점 - 전국 평균미만일 경우 : 1점	2

* 업무지원사이트 전산입력자료를 근거로 개발원에서 일괄 산출함

14. 질적평가 점수(시·도)

- * 시·도 차원의 노인일자리사업 내실화 및 활성화 노력
- * 2차 평가결과 우수 프로그램 배출정도 반영
- * 총 배점: 10점

노인일자리사업 프로그램 1차 평가 세부지표

- * 유형별 적용 여부는 괄호 안에 명시되어 있음(전 유형에 해당되는 경우 '공통'으로 표기)
- * 통합형 중 시장형 초기자본 지원 시범사업은 제외하며 지역혁신사업은 해당됨
- * 지역혁신사업은 실제 5개 사업유형 중 해당되는 유형의 평가지표 적용함
(예: 통합형 노노케어 -> 복지형 평가지표로 평가)
- * 회색 부분은 가점 영역
- * 평가대상 기간: 2007년 사업 시작 ~ 2007. 12월까지(일부 문항 예외 적용)
- * 사업목표량(배정 일자리 수, 사업기간, 급여)의 산출기준은 2007년 6월 1일 현재 사업계획서로 함

[사업계획의 적절성]

사업계획의 적절성(공익, 교육, 복지, 인력파견형)

평가기준	배점	점수			
		A	B	C	D
A: 3가지 이상 해당 B: 2가지 해당 C: 1가지 해당 D: 해당사항 없음	10	10	7	4	0

- * 사업의 타당성 및 필요성을 확보하기 위한 사전 수요조사의 충실성 평가
- * 사업계획의 적절성 포함 사항
 - 지역특성 및 욕구조사 등 사업 필요성 입증 자료(객관적 데이터를 활용한 경우에만 인정)
 - 지역 내 관련사업 추진 기관 또는 사업체 현황 조사
 - 수요처 및 수요자 예측 자료
 - 서비스 차별화 계획(경쟁력 확보 계획)
 - 지역자원 동원계획

- 전년도 만족도 조사 결과에 따른 참여자 또는 수요처의 의견 반영(계속사업)
- 전년도 자체 사업평가에 따른 문제점 조치 반영(계속사업) 등

* 증빙서류: 수요 조사 결과 보고서, 출장 복명서, 사업평가서, 사업계획서 등

사업계획의 적절성(시장형)

평가기준	배점	점수			
		A	B	C	D
A: 3가지 이상 해당 B: 2가지 해당 C: 1가지 해당 D: 해당사항 없음	14	14	10	6	0

* 사업의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사전 수익창출계획의 충실성 평가

* 사업계획의 적절성 포함 사항

- 지역특성 및 욕구조사(객관적 데이터를 활용한 경우에만 인정)
- 지역 내 관련사업 추진 기관 또는 사업체 현황 조사
- 판로확보 계획
- 품질 또는 서비스 차별화 계획(경쟁력 확보 계획)
- 수익 또는 손익분기점 예측 자료
- 지역자원 동원계획
- 전년도 자체 사업평가에 따른 문제점 조치 반영(계속사업) 등

* 증빙서류: 수요 조사 결과 보고서, 출장 복명서, 사업평가서, 사업계획서 등

추진계획의 단계별 구체성 확보(시장형)

평가기준	배점	점수		
		A	B	C
A: 2가지 해당 B: 1가지 해당 C: 해당사항 없음	6	6	2	0

* 증빙서류: 사업계획서

* 추진계획의 단계별 구체성 확보 여부

- 사업 안정화 또는 자립을 위한 구체적인 중장기(3년) 계획
- 월별 추진계획

사업내용의 독창성 및 지역특성 반영여부(공통)

평가기준	배점	점수	
		해당	비해당
지역특화사업 또는 신규아이템의 사업화 여부	2	2	0

- * 증빙자료: 사업계획서, 특수성 및 독창성 증빙자료
- * 노인일자리사업으로 시행되지 않았던 신규 아이템의 시도 여부
- * 그 지역에 한정된 특수한 환경 및 욕구, 자원을 활용한 사업의 시도여부

[참여자 모집 및 선정의 적절성]

다양한 매체활용을 통한 공개모집 여부(공통)

평가기준	배점	점수			
		A	B	C	D
A: 4가지 이상 해당	5 (10)	5 (10)	3 (6)	1 (3)	0 (0)
B: 2~3가지 해당					
C: 1가지 해당					
D: 해당사항 없음					

- * 홍보매체: 현수막, 지역신문, 지역소식지, 반상회보, 구정신문, 리플렛, 각종 게시판, 인터넷 등
- * 괄호 안은 공익형 배점임
- * 증빙자료: 홍보 증빙자료

선발기준 준수 여부(교육, 복지, 시장, 인력파견형)

평가기준	배점	점수	
		해당	비해당
선발기준 보유 및 준수 여부	5	5	0

- * 증빙자료: 선발 기준표, 선발기준에 따른 정보조회 여부 입증 자료 등
- * 평가기준
 - 참여자 선발시 활용하는 선발기준 보유
 - 선발기준에 따른 참여자 선발 증빙자료

□ 선발기준 준수 및 대기순위 적용 여부(공익형)

평가기준	배점	점수		
		A	B	C
A: 2가지 해당 C: 해당 없음	10	10	6	0
B: 1가지 해당				

- 선발기준 보유 및 준수
- 대기 순위에 따른 중도 참여자 선발 여부
- * 증빙자료
 - 참여자 선발시 활용하는 선발기준 보유
 - 선발기준에 따른 참여자 선발 증빙자료
 - 순위결정명부
 - 중도탈락자 발생시, 순위결정명부에 따른 참여자 선발 증빙자료
- ※ 중도탈락 발생이 없는 경우, 순위결정 명부 보유 여부로 평가함

[참여자 교육의 충실성]

□ 교육시간 준수 여부(공통)

평가기준	배점		점수	
			해당	비해당
교육시간 준수 여부	공익, 시장형	10	10	0
	인력파견형			
	교육형	6	6	0
	복지형	8	8	0

* 증빙자료: 교육계획안, 결과보고서, 공문 등

※ 필수 교육 이수시간

	소양교육	직무교육
공익형	4시간	4시간 이상
교육형	4시간	20시간 이상
복지형, 시장형, 인력파견형	4시간	8시간 이상

보수(재)교육 실시 여부(교육형, 복지형)

평가기준	배점	점수	
		해당	비해당
보수(재)교육 실시 여부	10 (12)	10 (12)	0 (0)

- * 증빙자료: 교육계획안, 공문, 결과보고서 등
- * 괄호 안은 복지형 배점
- * 소양 및 직무 교육 이외의 직무 보수교육 실시 여부

외부 전문강사 활용 여부(교육형)

평가기준	배점	점수	
		해당	비해당
외부 전문강사 활용 여부	4	4	0

- * 증빙자료: 공문, 결과보고, 교육계획서 등

[사업수행 및 관리 충실성]

참여자 간담회 실시여부(공통)

평가기준	배점		점수		
			A	B	C
A: 월 1회 B: 분기 1회 C: 0회	공익형	10	10	5	0
	교육, 복지형	9	9	4	0
	시장형	5	5	2	0
	인력파견형	7	7	3	0

- * 증빙자료: 공문, 결과보고, 회의록 등

수요처 의견수렴체계 구축여부(교육형)

평가기준	배점	점수	
		해당	비해당
수요처 의견수렴체계 구축 여부	9	9	0

- * 증빙자료: 공문, 결과보고서, 의견수렴 및 조치사항 기록 등

* 수요처 의견수렴체계: 수요처 간담회 및 설명회, 수요처 방문, 전화상담 등

※ 방문 및 전화상담의 경우 내용 기록이 있는 경우에만 해당으로 인정

□ 수혜자 관리체계 구축여부(복지형)

평가기준	배점	점수	
		해당	비해당
수혜자 관리체계구축 여부	9	9	0

※ 타 조직 또는 조직 내 부서 간 업무협조로 수혜자를 관리하는 경우도 해당으로 인정(단, 증빙자료 제시)

※ 재가가 아닌 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의 경우, 수요처 관리체계 구축 시 수혜자 관리체계 구축으로 인정(수요처 의견수렴체계 구축 여부 평가지표 참고)

* 증빙자료: 수혜자 관리카드, 업무활동 일지, 현장방문 관련 공문

□ 취업자 사후관리체계 구축여부(인력파견형)

평가기준	배점	점수			
		A	B	C	D
A: 3가지 이상 해당 B: 2가지 해당 C: 1가지 해당 D: 해당사항 없음	17.5	17.5	14.5	11.5	0

* 취업자 사후관리체계 포함 사항

- 취업자의 계속 근무 확인
- 취업자 상담
- 고용처(수요처) 상담
- 취업자 재교육 등

* 증빙자료: 공문, 상담일지 또는 기록, 사후관리 장부

* 취업자 및 고용처 상담의 경우, 방문상담과 전화상담 모두 인정

* 상담의 경우, 기록이 있는 경우에만 해당으로 인정

□ 자체평가 및 만족도 조사 실시(공통)

평가기준	배점		점수	
			해당	비해당
자체 평가 실시 여부	공익형	9	9	0
	교육, 복지형	7.2	7.2	0
	시장형	4.5	4.5	0
	인력파견형	6.3	6.3	0
만족도 조사 실시 여부	공익형	6	6	0
	교육, 복지형	4.8	4.8	0
	시장형	3	3	0
	인력파견형	4.2	4.2	0

* 증빙자료: 결과보고서

* 자체평가: 중간평가 및 종결평가 모두 해당

* 참여자, 수요처, 수혜자 만족도 조사 중 하나라도 실시한 경우 해당으로 인정

□ 사업 지속성(시장형)

평가기준	배점	점수		
		A	B	C
참여인원 축소 및 임금삭감 없이 사업지속 A: 3개월 이상 연장 B: 2개월 연장 C: 1개월 연장	12.5	12.5	9.5	6.5
참여인원 축소 또는 임금삭감 하여 사업지속 A: 3개월 이상 연장 B: 2개월 연장 C: 1개월 연장	9.5	9.5	6.5	3.5
기본개월수(5개월) 운영	0	0		

※ 참여자의 개인사정 또는 매출액 변화로 인한 소폭의 차이는 인정

□ 사업내실화 노력여부(공통)

평가기준	적용 유형	배점	점수	
			해당	비해당
외부자원 연계 또는 활용실적	공통	2	2	0
강사료(이용료) 지급 수요처 확보 여부	교육형 복지형	2	2	0
사업연장 실시 여부	공익형 교육형 복지형	2	2	0

* 외부자원 연계 또는 활용실적(공통)

- 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외부의 시스템(조직 또는 인력)을 연계하거나 외부자원을 활용한 실적이 있는 경우
- 증빙자료: 협조공문, 협약서, 사업계획서 등

* 강사료 지급 수요처(교육형, 복지형)

- 수요처로부터 강사료 또는 참여자 실비 등을 지급받은 실적이 1회라도 있는 경우
- 증빙자료: 통장사본, 영수증 사본 등

* 사업연장(공익형, 교육형, 복지형)

- 목표 사업기간 (배정된 예산으로 운영되는 사업기간) 이후, 1개월이라도 사업을 연장하여 실시한 경우
- 사업연장은 **자원봉사나 자체적인 재원확보**를 통해 연장된 경우만 인정(수요처의 강사료 지급, 외부자원 활용, 지자체 지원 등)
- 미집행 인건비 및 부대경비를 활용하여 연장된 경우는 제외
- 증빙자료: 연장하여 실시된 기간 동안의 급여 지급 증빙 자료 및 자원봉사 입증 자료

※ 사업 내실화 노력의 충실성 여부는 2차 평가를 통해 자세히 평가

[사업성과]

□ 사업목표 달성도(공통)

* 업무지원사이트 전산입력자료를 근거로 개발원에서 일괄 산출

* 사업목표량의 기준 시점은 **6월 1일 기준** 사업계획서상에 명시되어 있는 사업목표로 함

1) 공익형/ 복지형/ 교육형

① 사업 목표량 달성도

$$\frac{(\text{참여자별 급여} \times \text{참여기간}) \text{의 합}}{\text{사업목표량}(\text{급여} \times \text{배정 일자리수} \times \text{사업기간})}$$

평가기준	배점	점수				
		A	B	C	D	E
A : 90% 이상	15 (14)	15 (14)	12 (11)	9 (7)	6 (4)	3 (1)
B : 80% 이상 ~ 90% 미만						
C : 70% 이상 ~ 80% 미만						
D : 60% 이상 ~ 70% 미만						
E : 60% 미만						

* 예산 집행 실적을 통해 배정된 목표 사업량의 달성정도 평가

* 괄호 안은 공익형 배점

② 일자리 지속성

총 목표 급여액(목표사업기간×목표급여)의 85% 이상을 지급받은 참여자 수
배정 일자리수

평가기준	배점	점수				
		A	B	C	D	E
A : 90% 이상	15 (21)	15 (21)	12 (16)	9 (12)	6 (8)	3 (94)
B : 80% 이상 ~ 90% 미만						
C : 70% 이상 ~ 80% 미만						
D : 60% 이상 ~ 70% 미만						
E : 60% 미만						

* 괄호 안은 공익형 배점

※ 미집행 인건비 및 부대경비를 활용하여 연장된 기간 동안의 임금도 포함

예시) 배정 일자리수가 50, 목표 사업기간이 7개월, 목표 급여액이 20만원인 경우,
 ☞ 목표 급여액 140만원(7개월×20만원)의 85%는 119만원
 ☞ 총 사업기간 동안 119만원 이상 지급받은 참여자 수가 35명이면,

$$\text{일자리 지속성(\%)} = \frac{35\text{명}}{50\text{명}} \times 100 = 70(\%)$$

2) 시장형

$$\text{사업목표량 달성도} = \frac{\text{월 참여인원의 합}}{\text{배정 일자리수} \times \text{목표사업기간}}$$

* 월 참여인원: 당해 월에 급여를 지급받은 참여자 수

평가기준	배점	점수				
		A	B	C	D	E
A : 90% 이상 B : 80% 이상 ~ 90% 미만 C : 70% 이상 ~ 80% 미만 D : 60% 이상 ~ 70% 미만 E : 60% 미만	14	14	11	7	4	1

3) 인력파견형

① 사업 목표량 달성도

$$\text{사업목표량 달성도} = \frac{\text{참여인원}}{\text{배정 일자리수}}$$

평가기준	배점	점수				
		A	B	C	D	E
A : 90% 이상 B : 80% 이상 ~ 90% 미만 C : 70% 이상 ~ 80% 미만 D : 60% 이상 ~ 70% 미만 E : 60% 미만	17.5	17.5	14	10.5	7	3.5

- * 증빙자료: 교육이수 입증자료 등
- * 참여인원: 교육까지 이수 받은 인력풀 구성원 수를 사업 참여자로 인정
- * 소양교육만 이수한 경우도 교육이수로 인정함

② 취업 목표량 달성도

$$\text{취업 목표량 달성도} = \frac{\text{취업자(파견자) 수}}{\text{배정 일자리수}}$$

평가기준	배점	점수				
		A	B	C	D	E
A : 90% 이상 B : 80% 이상 ~ 90% 미만 C : 70% 이상 ~ 80% 미만 D : 60% 이상 ~ 70% 미만 E : 60% 미만	17.5	17.5	14	10.5	7	3.5

- * 07년 사업시작월 ~ 07년 12월까지 취업자 또는 파견자 수
- * 연인원 또는 취업(파견) 횟수가 아닌 실인원으로 계산함
- * 급여수준 및 고용기간, 파견횟수 등, 세부적인 업종 및 사업상의 특수성은 2차 평가에서 평가함

1인당 연간 매출액(시장형)

$$\text{1인당 연간 매출액} = \frac{\text{총 매출액}}{\text{월평균 참여인원}}$$

- * 총 매출액 : 재화와 용역 제공 댓가로 받은 총 금액
- * 07년 사업시작월 ~ 07년 12월까지의 총 매출액

평가기준	배점	점수				
		A	B	C	D	E
A : 1인당 연간 매출액이 상위 20% 이상 B : 1인당 연간 매출액이 상위 40% 이상 ~ 20% 미만 C : 1인당 연간 매출액이 상위 60% 이상 ~ 40% 미만 D : 1인당 연간 매출액이 상위 80% 이상 ~ 60% 미만 E : 1인당 연간 매출액이 상위 80% 미만	21	21	16	12	8	4

- * 업무지원사이트 전산입력자료를 근거로 개발원에서 일괄 산출
- * 매출이 없는 사업단을 제외한 나머지 사업단들을 대상으로 상대평가
- * 매출 발생이 없는 경우 0점 처리

□ 취업(파견)성과(인력파견형)

평가기준	배점	점수				
		A	B	C	D	E
A : 취업자수가 상위 20% 이상 B : 취업자수가 상위 40% 이상 ~ 20% 미만 C : 취업자수가 상위 60% 이상 ~ 40% 미만 D : 취업자수가 상위 80% 이상 ~ 60% 미만 E : 취업자수가 상위 80% 미만	6	6	5	4	3	2

- * 업무지원사이트 전산입력자료를 근거로 개발원에서 일괄 산출
- * 취업실적이 없는 프로그램을 제외한 나머지 프로그램들 중 상대평가로 배점함
- * 07년 사업시작월 ~ 07년 12월까지 취업자 또는 파견자 수
- * 연인원 또는 취업(파견) 횟수가 아닌 실인원으로 계산함
- * 취업실적이 없는 사업단을 제외한 나머지 사업단들을 대상으로 상대평가
- * 취업실적이 없는 경우 0점 처리

붙임3. 2차 평가지표(안)

'07년 노인일자리사업 시군구 2차 평가 기술서(안)

지역 내 노인일자리사업 전달체계 확충 및 효율화 노력 기술(10점)

○ 다양한 공급자원(사업수행기관) 확보 노력(4점)

- 수행능력이 있는 공급자원의 적정 수 확보를 통한 사업량의 합리적 배분 노력
- 수행능력 유무의 기준은 지침내용을 적용하며, 적정 수 확보 여부는 지역별 인프라 편차와 사업량을 고려하여 평가함

○ 노인일자리사업지역협의체 운영 활성화 노력(6점)

- 민관의 합리적·효율적인 사업운영을 위한 지역협의체 활용 노력
- 구성현황(참여기관), 운영횟수, 주요 노인일자리사업 현안 결정사항 등 기술 예시) 사업량 협의, 노노케어 사업 범위 조정 등 노인일자리사업 관련 현안

※ 지역 내 타 협의체를 통해 노인일자리사업 운영 관련 내용을 협의, 조정하는 경우, 해당내용을 기술하고 입증자료 제시

사업 수행기관 지원의 충실성(20점)

- 예산의 적시 집행, 사업비 지원, 참여자 모집 및 선정, 교육, 수요처 및 수혜자 발굴 지원 등 사업 운영 전 과정에서 사업 수행기관의 원활한 사업운영을 위한 협력 및 지원 내용 기술

○ 협력 및 지원 결과 가시적 성과가 있는 경우 함께 기술함

예시) 지역특화사업 발굴 사례, 사업의 안정적 정착 및 발전 사례, 수요처 발굴 사례 등

- ※ 지자체가 지역 내 독자적인 사업수행기관으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
- 읍면동 또는 노인회, 직영 기관 등 실질적인 직접 사업수행 기관에 대한 지원사항을 기술할 것

비예산 일자리 지원 실적(10점)

- 노인일자리 예산 사업 이외의 비예산 영역에서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원 노력
- 시니어클럽, 노인회 취업지원센터 등 노인일자리 관련 기관의 일자리 창출 사업 지원, 취업박람회 및 노인공동작업장 지원 등

사업운영 관리의 충실성(10점)

- 지도점검의 충실성(5점)
 - 추진내용 및 조치 결과의 충실성
- 사업 자체평가의 충실성(5점)
 - 워크숍 및 간담회, 평가회 등을 통한 관내 노인일자리사업의 문제점 파악 및 개선방안 마련 여부
 - 시군구 자체 만족도 조사 실시 등 사업분석 및 평가를 위한 노력 사례 있는 경우 기술

’07년 노인일자리사업 프로그램 2차 평가 기술서(안)

I. 투입 영역 [35점] (서술식 2개)

노인일자리사업 **담당인력의 전문성 및 자원 확보**를 위한 자구노력 기술(15점).

○ 담당인력의 전문성 확보 노력: 전문인력 채용 및 담당자의 전문성 확보 또는 강화를 위한 교육 등 관련 노력을 모두 기술할 것(5점)

예시) 노인일자리사업 전담자 채용 및 배치(타 업무 겸직 제외), 사업관련 경력보유자 채용, 업무지속성,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지원 등.

※ 수행기관에 따라 노력 인정 범위 차별화

○ 자원 확보 노력: 본 프로그램에 투입된 경우만 인정하며, 현금과 현물, 인력 모두 해당되며, 상세히 기술할 것(10점)

예시) 지자체, 기관 자체(모법인) 지원, 외부 기금 확보 등

사업배경, 사업목표 및 기대효과, 실제 제공된 사업 내용(서비스 내용)에 대해 간략히 기술(20점).

○ 사업배경 서술 시, 지역육구 및 수요조사, 시장조사 결과가 있는 경우 함

게 기술하며, 계속사업인 경우, 전년도 자체사업평가로 나타난 문제점 및 욕구, 수요처의 반응 등이 올해 사업에 반영되었다면 함께 기술할 것.

○ 본 항목에서 평가되는 요소는 아래와 같음

1) 사업선정의 필요성 및 타당성(10점)

- 지역욕구 및 수요조사 결과 등으로 판단

2) 사업내용의 적절성 및 독창성(10점)

- 사업목표와의 연계성, 사업내용의 노인적합성 및 지역적합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며, 시장형의 경우 수익창출 가능성, 파견형의 경우 고용창출 가능성으로 판단(5점)

- 사업내용의 독창성(5점)

II. 과정 영역 [35점/20점] (서술식 1개)

※ 공익, 교육, 복지형 35점

※ 시장형, 인력파견형 20점

사업운영의 효율성 및 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 기술(35/20)

○ 참여자 모집 및 선정에서 사업종결까지의 모든 노력이 포함되며, 각 업무 추진 단계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개선노력이 있는 경우 포함하여 서술할 것

-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활용(지역 내 관련단체 및 기관들의 연계)한 경우 반드시 포함하여 서술할 것
- 아래 항목 중, **5개 이상** 선택하여 기술하며, 각 영역 중 반드시 1개 항목이 포함되도록 선택함

영역	해당번호
참여자	1), 2), 3)
수요처 및 수혜자	4), 5)
서비스 질적 제고 및 장기발전 노력	6, 7)

- 각 영역의 배점은 동일하며(공익·교육·복지형 각 5점, 시장·인력파견형 각 2.85점), 6개 이상 서술한 경우, 5개 이외의 사례도 해당내용이 우수 또는 탁월한 경우에는 종합평정에서 점수 부여함
- 서술 항목은 아래와 같음

1) 참여자 모집 및 선정의 투명성과 합리성 확보 노력

- 사업에 적절한 참여자를 모집하기 위한 합리적인 기준 제시와 그에 따른 투명한 모집 및 선발

2) 참여자 교육 내실화 노력

- 전문적 교육 제공을 위한 외부강사 및 외부전문기관 연계 여부
- 참여자 보수교육을 실시한 경우, 실시 횟수 및 시간 필히 기재
- 기타 교육내용 및 운영상의 특이사항 등

3) 참여자 관리의 충실성 확보 노력

- 참여자의 업무활동 점검 및 관리 방식
- 참여자의 사기진작 및 동기부여를 위한 노력, 간담회, 자체 모임 등 **참여자 중심 운영구조** 확립을 위한 노력
- 인력파견형: 고용형의 경우, 취업자 **사후관리 체계** 및 주기에 대해 기재, 파견형의 경우 일반적인 인력풀 구성원들의 관리 방식

4) 수요처(판로) 또는 활동처, 수혜자 발굴 노력 및 성과

- 참여노인의 활동처 발굴을 위한 노력을 기술하되 유형별로 아래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기술
 - 공익형 및 교육형: 수요기관(활동처) 개발 건수
 - 복지형: 수혜자 규모(실인원, 연인원) 또는 수혜기관 수
 - 복지형 노노케어 사업: 수혜자 발굴 및 선정과정
 - 시장형 및 인력파견형: 안정적 판로 또는 판촉활동, 수요처 발굴노력 및 성과

5) 수요처 및 수혜자 관리의 충실성 확보 노력

- 수요처 또는 수혜자의 의견수렴 체계 및 반영여부를 포함한 전반적인 관리 방식
- 시장형 사업 거래처 및 고객관리 등

6) 서비스의 양적, 질적 내실화 노력

- 연중 지속적인 서비스 제공 노력 포함(연장개월수) 서비스의 차별화 및 질적 제고 노력
- 시장형 상품(서비스)의 시장성 강화(품질개선) 노력
- 기타 사업 운영상의 문제 개선 노력

7) 기타 장기적 발전 가능성 확보 노력

- 수요처로부터 강사료 또는 이용료를 지급받고 있는 경우, 지급기관 수, 지급인원, 지급기간, 지급금액 등에 대해 기술
- 시장형 사업의 경우, 2007년 한해 투입된 총 사업비와 2007년 12월말 기준 보유하고 있는 적립금액(업종별 차이는 종합평정에서 고려) 등
- 기타 위의 항목에서 평가되지 않은 자구 노력 기술

Ⅲ. 산출 영역 [20점/35점] (서술식 1개)

※ 공익, 교육, 복지형 20점/ 시장형, 인력파견형 35점

※ 기술식 이외의 지표는 전산을 통해 개발원에서 일괄 산출함

1) 공익, 교육, 복지형(20점)

- (1차 평가지표) 일자리 지속성 (10점)
- 사업성과 또는 기대효과 달성여부 서술(10점)

- 참여자, 수요처, 수혜자 측면 모두에 대해 기술
- 사업을 통한 지역사회 문제의 해결 또는 감소 사례가 있는 경우 기술
- 만족도 조사 실시한 경우, 결과 반영하여 기술
- 기타 성과입증 가능한 객관적 자료 제시(교통사고 감소율, 민원발생 감소율, 학대상담 신고 증가율, 수요처의 재이용 계약, 수요기관 확대 등)

2) 시장형(35점)

- (1차 평가지표) 1인당 연간 매출액(15점)
- 월평균 참여자수(15점)
- 사업성과 또는 기대효과 달성여부 서술(5점)

- 참여자 측면에 대해 기술
- 사업 자체가 공익성을 갖는 경우, 지역사회 기여도 기술
- 만족도 조사 실시한 경우, 결과 반영하여 기술

3) 인력과건형(35점)

(1차 평가) 사업목표량 달성도 + 취업목표량 달성도(10점)

(1차 평가) 취업성과점수(10점)

고용유지기간 및 1인당 월 급여수준(10점)

※ 전산자료로 일괄 산출, 사후점수 부여(상대평가)

○ 고용안정성: 안정적인 고용보장 및 정기적 파견 기회 제공여부(5점)

- 고용형: 참여자 평균 고용유지기간

- 파견형: 1인 월평균 파견횟수

○ 월 급여수준(5점)

사업성과 또는 기대효과 달성여부 서술(5점)

○ 참여자 및 수요처 측면에 대해 기술

○ 만족도 조사 실시한 경우, 결과 반영하여 기술

IV . 종합평정점수 [10점]

○ 기관별, 업종(사업내용) 특수성, 지역별 차이를 반영하여 조정

○ 기타 위의 평가항목에서 평가받지 못한 부분에 대한 가점